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 지속가능성보고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성 보고서 개요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활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 본 보고서는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어 총회개최 회무와 관련한 사항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원칙	NPO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2016[1], GRI Standard 2016 (GRI-Referenced)
보고범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보고대상	협의회 이해관계자, 지역협의회
보고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보고검증	내부 실무 담당자 및 임원 검증
보고주기	매년 보고(2022년 첫 발간)

1) NPO지속가능보고가이드라인(서울NPO지원센터, 2016)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단체의 특징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목차 CONTENTS

인사말

파트너 메시지

PART 0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19

20 비전과 미션
21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구조
22 의사결정구조
26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걸어온 길
28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트워크

PART 02 이해관계자

3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해관계자
33 파트너십 협약 체결기관

PART 03 제24차 정기총회 회무자료

1. 2022년 사업보고회 및 제24차 정기총회 37

37 총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40 2022 사업보고회 및 24차 정기총회 개요
41 제24차 정기총회 수상자

2. 안건심의 42

42 제23차 정기총회 회의록
45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보고서
48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개정(안)
54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계획(안)
68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안)
70 임원선출(상임회장, 사업감사, 사무총장)

PART 04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돌아보기

1. 2022 활동 및 주요 성과 75

76 한눈에 보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81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82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86 국내외 교류협력
87 현안실천
92 교육 및 홍보

2. 재정 및 조직 관련 95

95 재정운영
105 지속가능한 조직 구성, 인권, 노동, 소통
107 지속가능성 확산, 정보, 환경보호

부록

111 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115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및 네트워크 현황
121 혁신과비전 특별위원회 보고서
12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140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148 NPO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 보고지표
149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간자료 목록
151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활동 결과

인사말

상임회장 **김 영 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국의 협의회 회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총회가 3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간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우리 협의회 역사에서 새로운 도전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어 그동안 협의회의 요구를 통해 힘들게 이어오던 지속가능발전업무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 시행에 따라서 정부의 담당부서가 환경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변경되면서 전국협의회와 지역협의회는 환경부서와의 오랜 협업 구조를 넘어서 새로운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제정과 지자체 담당부서 변경논란 속에 의회의 상임위와의 관계설정도 필요했고, 대선과 지선,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부와의 파트너십 구축, SDGs가 전면화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협의회 간의 역할규정과 지자체 이행 매뉴얼 구축 등 새로운 과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본법, 통합적 지속가능 정책시행, 정부의 기본전략으로 SDGs채택, 지속가능성 진단과 지표관리, 기본조례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폭넓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교육홍보활동 강화. 기업의 ESG경영 강화 등 그 간 우리 협의회가 오랫동안 숙원하던 과제들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지켜보며 지난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협의회에 요구되는 대응활동도 많았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해결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20여년 축적한 협의회의 민관협력 경험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훈련되고 준비된 협의회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여름 충남의 보령에서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여러 기관단체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방정부들과 진행한 여러차례의 협력사업,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관들과 함께 진지하게 숙의하여 정책을 제안했던 국회포럼,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권역별 토론회와 지역대회 등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 되어 추진했습니다.

지난해가 기본법 이행체계 시작을 준비하는 해였다면 2023년 새해는 국가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해야하는 해입니다.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난해 보령에서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실천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걸음들이 오늘 총회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 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의 귀빈들과 전국의 협의회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이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축사

국회의원 **윤 창 현**

안녕하십니까? 윤창현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4차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에너지무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감염병 대응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사회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있고, 그에 발맞추어 글로벌 산업계도 ESG라는 사회적가치경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수립되어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더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민관협력기구가 지역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기본법이 시행을 기반을 준비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실행의 해입니다. 우리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9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소개될수 있도록 성과사례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대전에서 기업의 ESG확산을 위한 포럼을 진행했고 국회에서도 세차례의 정책포럼을 공동개최 한 바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촉구하는 사항들이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사회, 경제,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수고하신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23년 힘찬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양 정 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4차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영진 상임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회장님들,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을 시대를 힘겹게 극복해 왔습니다.
감염병 발생초기에 우리는 초유의 팬데믹으로 생태문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관련된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의 개발과 성장중심의 사회로 회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의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SDGs)를 합의하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국가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27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에 다녀오면서 범부처에서 실행해야 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국제적 약속도 중요하고 국내의 실행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SDGS이행의 과정을 국회에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간 제안한 정책들이 미래 세대들과 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2023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신안군수 **박 우 량**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제24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4년간 한 길만을 걸어오신 김영진 상임회장님, 양준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여러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작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확산과 성과제고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캐나다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신안군과 한국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가 닥친 현실이 한국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지역과 현장에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물네살을 맞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년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국지속협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총회가 그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내자는 결의와 격려의 자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34개 지방정부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국협의회를 지지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계묘년 한해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 신안군도 꼭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트너 메시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 장 **김 병 완**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김병완입니다.

2023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의 가치인 환경, 사회, 경제, 평화, 협력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책무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의 의지와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적·지역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더 나은 삶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메시지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박 연 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지난 10년간의 핵심 파트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정부들과 함께 저탄소, 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중심의 공정한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이클레이와 SDGs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지속협은 2023년에도 함께할 일이 많습니다. 지속협이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역에 확산해주시면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지속협의 성공적인 지역활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권 기 태

대한민국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 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혁신연구소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여정에 지역 지속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파트너 메시지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무총장 **최 현 식**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는

대학의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캠퍼스 구축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협회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정기총회를 맞아 회장님. 사무총장님 및 관계자여러분께 협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김 정 필**

그 어떤 조직보다 글로컬 단위의 의제와 활동력을 유지하며 청년스러운 에너지를 이끌어오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24차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온 기본법의 시대와 모든 국내외 흐름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미래와 현재 세대 가릴 것 없이 2023년에 외치고 있는 요즘입니다.새 해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내실과 외모 모두를 심기일전하여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모두가 다같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의 정기총회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전국의 선배세대 활동가들은 물론 각 지역사회의 각 분야 청년들과도 연결되는 한 해로 움직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행보에 서로의 날개가 되어 비상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하는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파트너 메시지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공동회장
이우균 · 문태훈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 GLOBAL INITIATIVE FOR THE UNITED NATIONS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우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해당사자로서 미래세대의 권한부여뿐만 아니라 이행주체자로서 청년세대의 역량강화에도 주목하고 경륜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기관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PART 0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 비전과 미션
·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구조
· 의사결정구조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해관계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걸어온 길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Rio 국제회의의 결과인「의제21」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이행기구의 전국협의체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특별협의지위기구입니다.
2000년 6월 16일부터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제21, 새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이어지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이행의 방법으로 국제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제사회, 국가·지방정부, 시민, 기업 등 각 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실행기구인 협의회는 지난 20년간 지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4조 (사업)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국내 외 지자체, NGO들 간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 훈련
3.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4.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협력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6.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업미션과 비전

비전(Vision)

"지속가능발전 지역 실천 플랫폼"

우리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Governance의 확산,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민참여 의제발굴과 실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션(Missio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 이행"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5년 개최된 제70차 UN 정기총회 '유엔개발정상회의 2015(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 의결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2018년 12월 정부가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지역에서의 이행을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Core value)

영향력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협력(Governance)의 확산을 촉진합니다.

지속가능성

2030년까지 UN-SDGs의 달성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의 이행과 수립에 대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와 연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네트워크로 지역협의회와 국·내외의 전문기관,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유의 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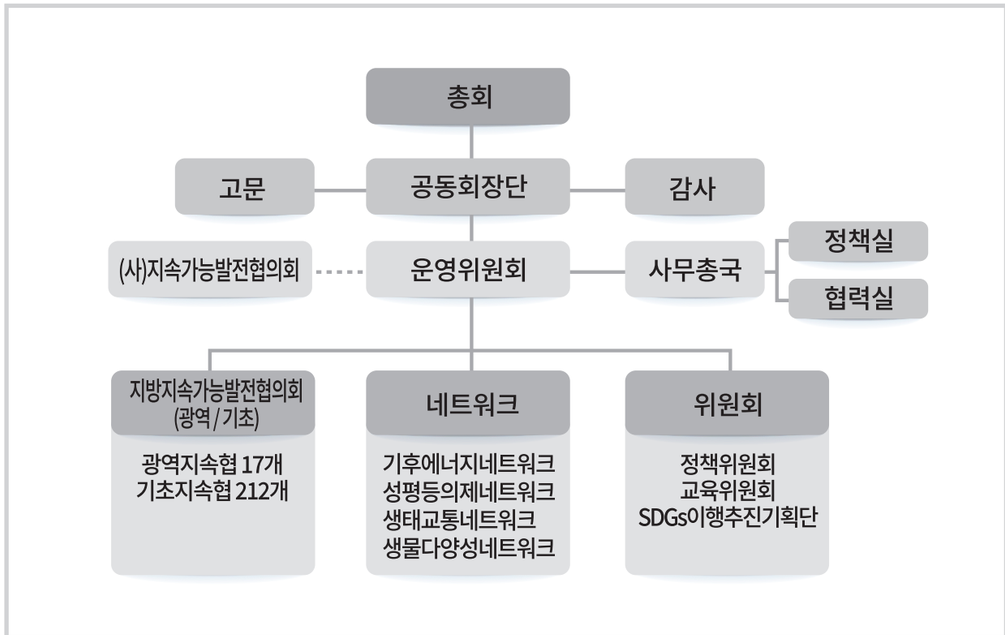

사무총국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있습니다.

성 명	직 급
양준화	사무총장
박 훈	협력실장
윤희철	정책연구단장
한순금	연구실장

성 명	직 급
박정진	사무국장
이지성	팀장
이윤희	사무간사

의사결정 구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13조(총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제1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16조(성립과 의결)』에 의거 연1회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총회에서는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3. 고문 추대, 4. 전국협의회 운영방향, 5. 사업계획 승인 및 예·결산, 6.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7. 기타 전국협의회 주요 업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거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단과 감사,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되는 운영위원장,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사무총장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광역 지속협 대표 중 1인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 중 1인의 상임회장과 16인의 공동회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임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임원은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임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회장단

성 명	지 역	직 책	비고
김영진	전남	전 농림부장관, 5선국회의원	상임회장
이경희	서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공동회장
구영기	부산	부산대학교 교수	공동회장
정현수	대구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공동회장
심형진	인천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공동회장
김조년	대전	대전 민들레의료생협 고문	공동회장
이병규	울산	울산대학교 교수	공동회장
이상진	세종	세종시 지역총괄계획가	공동회장
원호식	경기	한양대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장	공동회장
최 윤	강원	춘천 경실연 사무총장	공동회장
홍상표	충북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동회장
허재영	충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회장
유혜숙	전북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공동회장
권순태	경북	안동대학교 총장	공동회장
고태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동회장
공석	경남		
공석	광주		

감 사

성 명	소 속	직 책	비고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사업감사
김한수	김한수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회계감사

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

성 명	소 속	직 책	비고
제현수	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운영위원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18조(운영기구),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에 의거하여 구성(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환경부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 장,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네트워크 대표 등)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협의회의 사업 방향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소위원회 활동도 필요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참석인원
114차 운영위원회	1월3일(월) 14시 / 온라인 줌	- 2022년 제23차 정기총회 개최계획 검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협의회 방향 논의	29/29
115차 운영위원회	3월17일(목) 14시 / 광명공작기계회관	- 12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협의회 방향 논의 -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추진 논의 - 협의회 교육프로그램 추진 관련 논의 - 홍보사업 추진 검토 - 전국협의회 회비 납부 관련 검토	26/28
116차 운영위원회	5월17일(화) 14시 / 온라인 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환 대응 논의 -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추진 및 차기대회 개최지 검토 - 2022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 추진 논의 - 2022 활동가대회 유치 논의 및 활동가 지원관련 검토	24/28
117차 운영위원회	7월27일(수) 14시 / 광명공작기계회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후 협의회 방향 설정 논의 -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추진 및 차기대회 개최지 선정 - 활동가 지원관련 대상 확대 검토	21/28
118차 운영위원회	9월20일(화) 14시 / 온라인 줌	- 2022 전국 활동가대회 관련 검토 -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논의 - 표준조례 대응 관련 논의	26/28
119차 운영위원회	11월9일(수) 14시 / 온라인 줌	-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논의 -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논의	19/28

2022년 운영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소속지역	직 위	비고
1	제현수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2	민성환	서울	사무담당위원	광역
3	송낙원	부산	사무처장	광역
4	오용석	대구	사무처장	광역
5	지영일	인천	사무처장	광역
6	김재주	광주	사무처장	광역
7	추명구	대전	사무처장	광역
8	김태훈	울산	사무처장	광역
9	최병조	세종	사무처장	광역
10	박정민	경기	사무처장	광역
11	정명섭	강원	사무처장	광역
12	김대광	충북	사무처장	광역
13	정은주	충남	사무처장	광역
14	권영동	전북	사무처장	광역
15	박주영	전남	사업국장	광역
16	김주한	경북	사무처장	광역
17	박 찬	경남	사무처장	광역
18	정연옥	제주도	사무처장	광역
19	김두만	경기 의정부	사무국장	기초
20	이민영	경기 연천	사무국장	기초
21	김우현	경기 오산	사무국장	기초
22	장철현	강원 강릉	사무국장	기초
23	박난미	충남 예산	사무국장	기초
24	여경모	경남 통영	사무국장	기초
25	류명화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위원장	네트워크
	김대광	생물다양성네트워크	위원장	네트워크
	오용석	기후에너지네트워크	위원장	네트워크
	추명구	생태교통네트워크	위원장	네트워크
26	오수길	정책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회
	제현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회
27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28	양준화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걸어온 길

2000
- 6.16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창립총회
- 제2, 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공모전개최
- 전국환경포럼2000」 개최
-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2001
- 제1~5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개최
- 여성환경포럼 개최
- ICLEI 지방의제21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의제21 추진현황분석 및 평가지표개발 연구
- 친환경월드컵 지방의제21 네트워크 구성

2002
- LCSD 구성 및 지방의제21 제도화 워크숍 개최
- WSSD 지방의제21 참가단 운영
- 제4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제6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개최
- 제1회 지방의제21 실무자워크숍 개최
- 지구의날 2002 기념, 환경월드컵 성공기원 자전거 시민대행진 추진

2003
- 제7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개최
- 지방정부 녹색구매 캠페인 추진
- 지방정부 물 캠페인 추진
- 제2회 지방의제21 실무자 워크숍 개최
-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ICLEI 준회원 가입
- 제3회 세계 물 포럼 참가
- 2004 ICLEI 세계총회 참가

2004
- 지방의제21 제도화추진 특별위원회 운영
- 제8~9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개최
-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지방의제21 정보. 교육센터 운영
- 제3회 지방의제21 실무자워크숍 개최
- 지방의제21 실무자용 가이드북 제작
- 환경NGO 우수실천사례 자료집 제작
- 환경부 그린시티 지정사업 공동주관

2005
- 지속가능발전 법률제정 운동
-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좋은 정책 추진본부 사업 참여
- 지역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개발
- 제10~11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 제7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지역거버넌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TAI 참여
- 프랑스 지방의제21 교류사업
- 환경과 농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참여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참여

2006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제2회 그린시티 지정 사업 참여
- 지역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 운영
- ICLEI 세계총회 참가
- 아. 태 지방의제21 국제심포지엄
- 제8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제12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개최
- 전국 지방의제21 활동가 워크숍 개최
- ICLEI 아시아 환경포럼 참여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2007
-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제13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 개최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실천지원
- 지역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적용
- 지속가능발전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ESD-Net 참여
- 제2차 AGEPP 회의 개최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포럼 개최
- 2008 람사르총회 한국민간위원회 참여

2008
- 제10회 지방의제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지방의제21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0프로젝트 추진 실무위원 기획회의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운동
-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운동 지원
- 2008 람사르총회 참여 및 지원
- 한국습지희망포럼 공동주최
-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습지 CEPA 행동계획수립을 위한 포럼
- 2008 차 없는 거리 전국포럼 개최
- 제14회 지방의제 정책포럼 개최

2009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운동
- 한국지방의제21 백서 발간
- 09년 지방의제21 실천과제 추진실적 평가 실시
- 11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공모전 및 국제포럼
- 2009 ICLEI 세계총회 참가
- 제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

2010
-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지방의제21 통합정보인프라 구축 및 캠페인
-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 빈그릇 희망 실천운동 시범사업
- 지속가능발전 한국지방정부 정상포럼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위탁 운영

2011
- 제15~17차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개최
- 지역순회 정책워크숍 개최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정상포럼 추진
- 제13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 공모전 개최
- '지방의제21 해외추진사례와 한국 지방의제21의 발전방안' 연구
- 비전특별위원회 구축 · 운영

2012
-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워크숍 및 아카데미 개최
- 제18~21회 정책포럼
- 지방의제21 정책 토론회
- 2012 전국 지방의제21 실무자 워크숍
- 제14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몸전 개최
- Rio+20 및 2012 ICLEI 세계총회 참가

2013
- Rio+20 결의문 이행을 위한 지방의제21 활동방안 연구
-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워크숍
- 지속가능발전교육 전국워크숍
- 제15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UN ECOSOC 4년 보고서 제출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총서 단행본 발간

2014
-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워크숍
- 제16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전국학술세미나
- 제6회 자원순환의날 행사
- 제7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공동 개최
- 그린캠퍼스 운동을 통한 광역의제 공동사업 모색 워크숍
-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 4년 보고서 승인

2015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명칭통일 제안
-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 해결방안 연구
- 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역할 연구
- 제23~24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제17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2015 지속가능발전 실무자워크숍
- 2015 ICLEI 세계총회 참여

2016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순회포럼
- SDGs 이행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역할 연구
- 전국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및 지방정부의 기업 협력사업 현황조사
- 제25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워크숍
- 지속협 CSO-Net(시민사회네트워크) 등록
- UN 2030 SDGs 한국파트너십

2017
-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국가 SDGs 이행 거버넌스포럼
-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워크숍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SDGs 이행 지원
-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경상남도 SDGs 및 이행평가지표 개발

2018
- K_SDGs 수립 과정 협력
- 지속가능발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K-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미나
- 환경부 L-SDGs추진 컨설팅 사업 준비
- 2018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활동가 대회
-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SDGs 이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구용역
-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 워크숍 협력 추진행사 공동개최
- 한-EU 기후행동 프로젝트
-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여

2019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협력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속가능성 연구
- 동아시아 SDGs 컨퍼런스 '한중일몽' 4국의 SDGs 추진
- 2019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션 공동주최
- K-SDGs 연계 차세대 환경교육 리더 양성교육
- 2019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활동가 대회
-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전 개최
- 한-EU 기후행동 프로젝트
- 월간 환경포커스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기획 연재
-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
- 제1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추진

2020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정책과제 도출(Ⅰ)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비전포럼'
-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 그린뉴딜과 SDGs"
- 차세대 리더 양성 교육
- 지속가능발전 연수원 연구용역 협력
- 제10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 2020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전 개최
- 제2회 K- 솔라리그 사업추진
- 2020 한-EU 생태교통국제컨퍼런스
- P4G정상회의 대응 민간위원회 참여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1
-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모델 사업 발굴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전 개최
-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 차세대 탄소중립 리더 활동가 양성과정
- 제3회 K-솔라리그 협력
- RE100시민클럽 추진
- 202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대회

2022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 추진
- L-SDGs 이해관계자 워크숍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매뉴얼 개정판 발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권역 토론회(5회)
-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공모전개최
- 차세대 탄소중립 생태교통 리더 활동가 양성과정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수탁운영
-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개최 협력(3회)
- 제4회 K-솔라리그 시상식 개최 협력
- RE100시민클럽 사무국 운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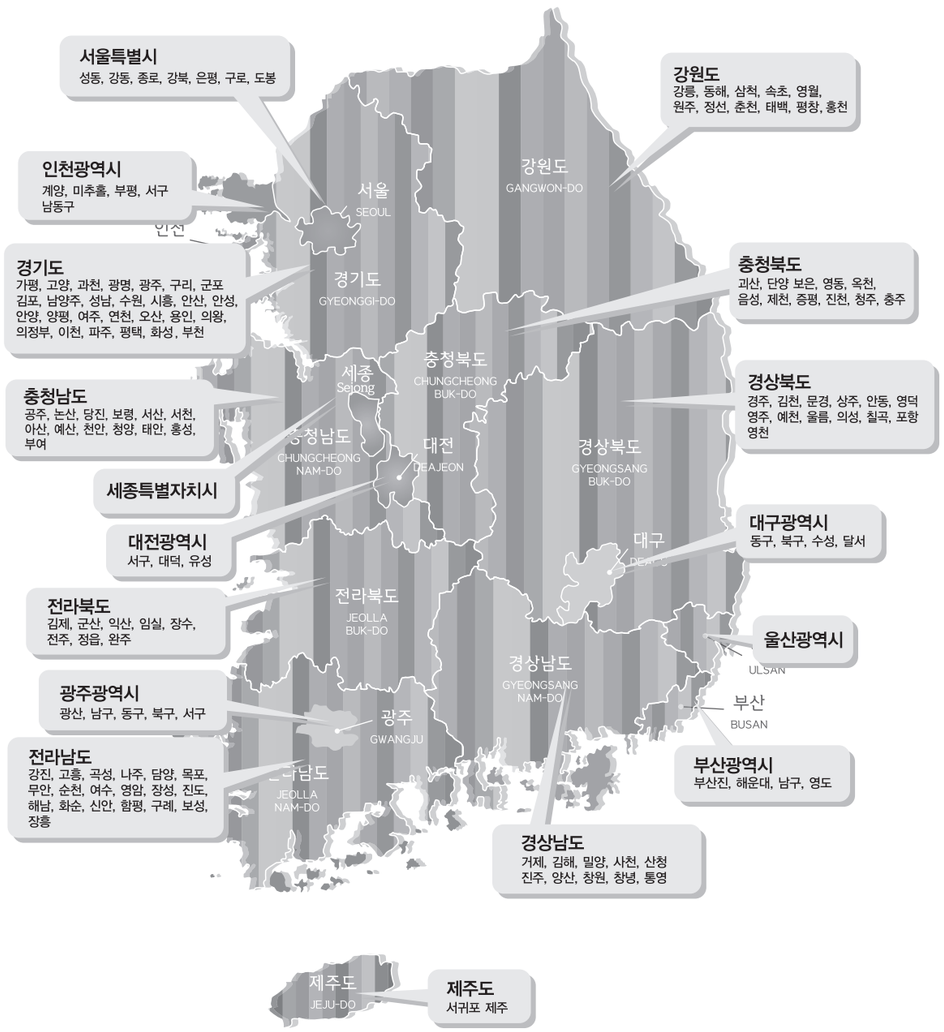

PART 02
이해관계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해관계자
· 파트너십 협약 체결기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해관계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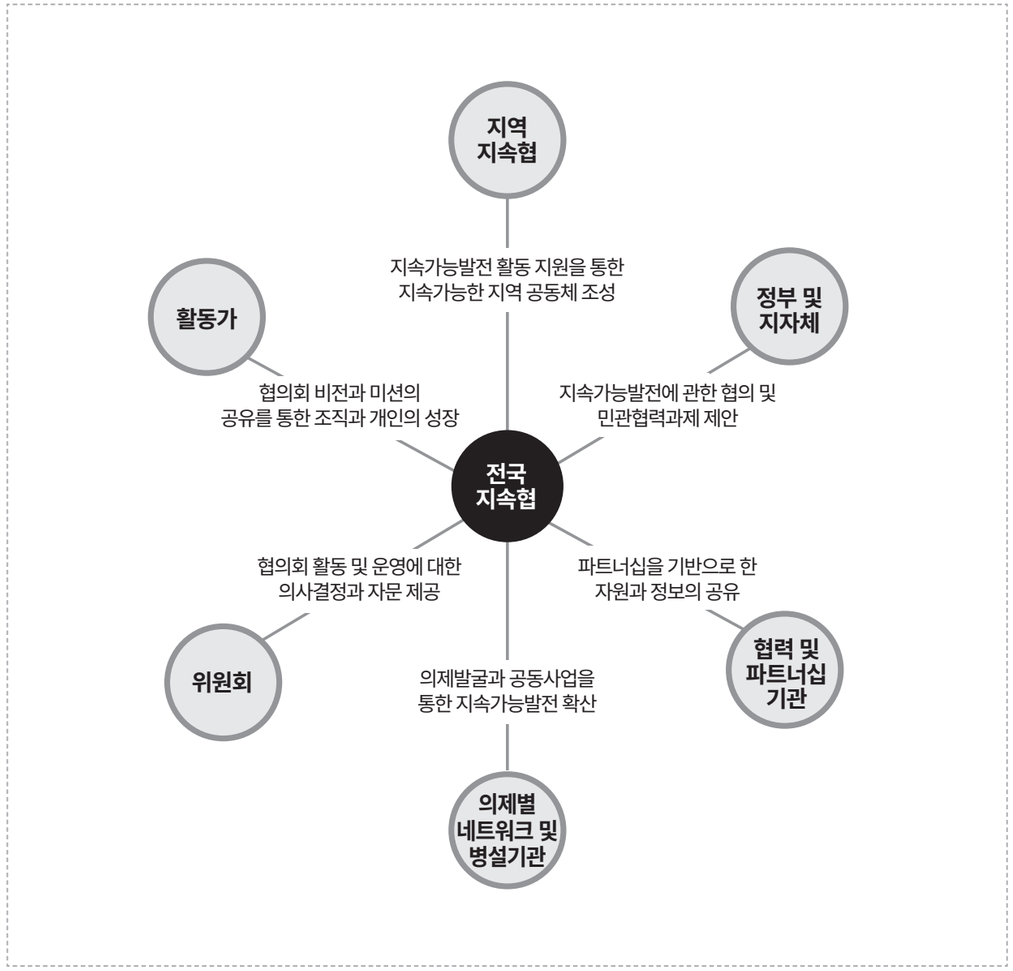

지역 지속협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들입니다.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 지원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사무총국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 입니다.
위원회	공동회장단, 운영위원회는 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단위이며,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자문위원회(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십니다. *공동회장단, 감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의제별 네트워크 및 병설기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의제발굴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기후에너지, 생물다양성, 생태교통, 성평등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있습니다. 법인은 별개 조직이지만 사업목적과 인적구성의 연계를 통해 협의 병설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 및 파트너십 기관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지속협과 밀접하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 및 조직들입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SDSN Korea,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SN YOuth Korea,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SDGs 시민사회네트워크, 솔라리그추진위원회, RE100시민클럽*
정부 및 지자체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회 및 지자체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협력과제를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지자체, 국회(정무위원회)*

파트너십 협약 체결기관

PART 03
제24차 정기총회 회무심의

1. 2022년 사업보고회 및 제24차 정기총회

· 총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 2022 사업보고회 및 제24차 정기총회 개요
· 제24차 정기총회 수상자

2. 안건심의

· 제23차 정기총회 회의록
·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보고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개정(안)
·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계획(안)
·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안)
· 임원선출(상임회장, 사업감사, 사무총장)

총회준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고

총회준비위원회

	소 속	성 명	비 고
1	운영위원회	제현수	위원장
2	정책위원회	오수길	
3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오용석	
4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김대광	
5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정민	
6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아	
7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8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총회준비위원회 활동

1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2022년 12월 23일(금) 10시/온라인 줌

○ **논의안건**

- 안건1.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계획 검토의 건
- 안건2. 정기총회 공로상 수상자 심의
- 안건3. 2022년 사업 및 회계 결산보고
- 안건4. 정관 개정(안)
- 안건5. 혁신과비전특위 활동 결과 공유
- 안건6.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검토

○ **주요 논의결과**

- 2022 대회 개최지였던 보령시와 양준화 사무총장에 대해 특별공로상, 지역추천은 협의회장 표창으로 시상하기로 함
- 정관 개정(안)으로 지역협의회 참여 회원은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23년 사업계획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과 협의회 위원, 활동가 대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
- 또한 법률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협의회에서 정관, 운영규정, 인사 등 다양한 규정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로 함
- 혁신과 비전특별위원회는 3개월 추가 운영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4차 정기총회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박연희 사업감사의 연임을 제안하였고, 참여위원들이 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비고
1	위원장	오수길	정책위원회 위원장	
2	광역	최병조	세종지속협 사무처장	
3	광역	추명구	대전지속협 사무처장	
4	기초	박윤경	안성지속협 사무국장	
5	기초	정정애	포항지속협 사무국장	
6	자문위원	김진화	교육위원	
7	분과·네트워크	김대광	생물다양성네트워크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2022년 11월 21일(월) 16시30분/온라인 줌

○ **논의안건** :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회 역할과 사무총장 선출규정, 진행프로세스 등 논의

○ **주요 논의결과** : 사무총장 입후보가 결정되면 투표방법을 논의하기로 함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2022년 12월 22일(목) 10시30분/온라인 줌

○ **논의안건** :

- 안건1. 사무총장 후보자 자격검증 및 선거인단 관리
- 안건2. 사무총장 선출 투표 방식 결정

○ **주요 논의결과**

-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당진시지속협 이동준 사무국장의 등록서류를 승인함.
- 사무총장 선출 투표 방식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선거운동규정에 전화나 이메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온라인으로 해석하기로 하고, 사무총장 후보자가 공보물을 전국협의회로 전달하면 지역으로 안내드리기로 함. 총회에서 선거운동 규정을 전화나 이메일에서 온라인 홍보로 변경하기로 함.

사무총장 선출 진행 프로세스

단계	시기	내용	비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총회개최 60일전 (11/11)	· 위원장,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처장 2인,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처장 2인, 자문위원 1인, 분과·네트워크위원장 1인 총 7명으로 구성	
선거 논의	11/21	· 투표방식 위원회 결정 · 선거 진행 계획 및 방식 논의	
선거 공고	총회개최 50일전 (11/22)	· 사무총장선거에 따른 선거공고(전국공지) · 등록기간, 제출방식에 대한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권자 확인 및 선거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전	· 총회대의원(선거권자) 추천 공지(11/28) · 선거권 지역 선거인 등록 요청(~12/21)	
후보자 등록	총회개최 23일전 (12/19-21)	· 등록기간 총회 20일 이전 3일간 · 선거권자 확인 및 선거인명부 작성(12/21)	
후보자 자격심사	12/22	· 후보자 자격 및 제출 서류(하단 참조) 검토 · 의사 확인 후 접수증 교부(12/22 또는 23)	
후보자 공지 및 토론회	총회개최 15일전 (12/27)	· 후보자의 제출 서류 등 정보 전국 공개 · 선거 전 또는 선거당일 후보자 토론회 개최	
선거운동	등록 직후부터 총회 개최일 전 (~1/10)	· 전화와 E-mail을 포함한 선거운동 · 자비로 현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3인을 운동원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에 등록되어야만 인정	
선거	총회 당일 (1/11)	· 후보자 정견발표 및 사무총장 선출(24차 총회) · 정기총회에 선거 결과 보고, 최종 승인	
해산	선출 후 1개월 이내	·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 사업보고회 및 제24차 정기총회
“회복으로 전환”

Ⅰ. 개최방향

○ 2023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방향 설정

Ⅱ. 행사개요

○ **일　　시** : 2023. 1. 11(수) 14:00~16:00
○ **주최/주관**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장　　소**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1층 대강당
○ **대　　상**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의원 150여명

III. 2022 사업보고회 및 제24차 정기총회 프로그램

공동회장단 간담회(13:00~14:00)	진행 :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 차기 상임회장 선출 - 지속가능발전 현안 논의	
접수(13:30~14:00)	
- 정기총회 등록 및 접수	
1부 : 기념식(14:00~14:30)	진행 :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 개회 - 내빈소개, 국민의례 - 개회사 : 김영진 상임회장 - 축사 :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원, 지방정부협의회장 등 - 시상 : · 지속가능발전인 시상 · 특별공로상 시상 · 표창장 시상 · 20주년 활동가 시상	
2부 : 정기총회 안건심의(14:35~16:00)	의장 : 전국협의회 김영진 상임회장
- 성원보고 - 서기 및 서명위원 선출 - 전차 회의록 보고 - 감사보고 - 2022년 사업 및 결산 심의·의결의 건 - 정관 개정(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토의 - 임원선출(상임회장, 사업감사, 사무총장) - 폐회	

제24차 정기총회 수상자

22년도 지속가능발전인 및 유공자

지속가능발전人상

수상자	소 속	비고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개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학회장 : 김병완	단체

특별공로상

수상자	소속 및 직책	비고
김동일	보령시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협의회장 표창

수상자	소속 및 직책	비고
박주영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전남
신정은	경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경북
박노찬	서천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충남
김홍식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전북
문경호	전북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주무관	전북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경기
전계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인천

20주년 근속 유공

수상자	소속 및 직책	비고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정연옥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대광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2022년 제23차 정기총회 회의록

■ 총회개요

- 일 시 : 2022년 1월 11일(화) 오후2시 ~ 오후5시
- 장 소 : 오프라인 - 광명공작기계회관(경기 광명시 일직로12번길 13) 7층 대회의실
  온라인 – 줌(ZOOM)
- 참석자 : 오프라인 10명(상임회장, 운영위원장, 네트워크위원장, 사무총국),
  온라인 참여 대의원, 지역협관계자 등 온라인참여로 총 130여명

■ 1부 개회식_ 사회 : 허기용 운영위원장

Ⅰ. 식순 안내 및 참가자 시스템 점검
Ⅱ. 회장단등 참가자 확인
Ⅲ. 개회사_ 김영진 상임회장
Ⅳ. 축 사_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Ⅴ. 지속가능발전인 시상
- 지속가능발전 人상
  - 지속가능발전인 개인 : 김병욱 국회의원
  - 지속가능발전인 기관 : 전주시(김승수시장)
- 지속가능발전 人상 수상자 대표로 전주시 김승수시장이 소감인사

Ⅵ. 공로상 시상
- 공로상
  - 남기주 경북지속협 사무처장
  - 손민호 인천지속협 운영위원
  - 박연수 충북지속협 (전)사무처장
  - 이승호 정읍지속협 운영위원장
  - 주승철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
  - 이석형 대구지속협 자원순환분과 위원장
  - 박민희 광주지속협 팀장
  - 임기옥 전국성평등의제 네트워크 공동위원장
  -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 한국국토정보공사 LX (기관표창)
- 공로상 대표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송창용 과장이 소감인사

■ 2부 정기총회 회무

Ⅰ. 개회 및 성원보고
- 총 84개 추진기구 추천 대의원 144명 중 92명 참석, 23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양준화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 김영진 상임회장이 성원이 되었기에 제23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14시 19분)

Ⅱ. 서기 및 서명위원 선출
- 김영진 상임회장이 회의록 서기 및 서명위원을 지명, 전원 동의하다.
  - 회의록 서기 : 전북 이성중 / • 회의록 서명위원 : 충북 김대광, 원주 제현수

Ⅲ. 전차 회의록 보고
- 양준화 사무총장이 2021년 제22차 정기총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전원 동의하다.

Ⅳ. 안건심의
1. 감사보고
- 김한수 회계감사가 2021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 박연희 사업감사가 2021년 사업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 경남 박찬 대의원이 회계 감사 보고서에 합계 오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양준화 사무총장이 합계 오류에 대해 문제없음을 설명하다.
- 김영진 상임회장이 감사보고에 대한 추가의견을 묻고 투표를 통해 원안대로 보고를 받다.

2. 임원선출(회계감사)
- 김영진 상임회장이 임원 선출에 대한 정관규정을 설명하다.
- 양준화 사무총장이 김한수 회계감사를 추천하고 연임에 대해 대의원들의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동의하여 김한수 회계감사를 선출하다.
- 김한수 회계감사가 취임 인사를 하다.

3. 2021년 사업 및 결산 심의·의결의 건
- 양준화 사무총장이 2021년도 사업, 결산을 보고하다.
- 경남 박찬 대의원이 지출결산에서 사업비와 관리운영비의 소계를 써주는 것이 명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양준화 사무총장이 차기 보고에서부터 보완하겠다고 답변하다
- 춘천 김상진 대의원이 예산 대비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양준화 사무총장이 설명하다.
- 김영진 상임회장이 추가 의견을 묻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보고를 받다.

4. 2022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 김영진 상임회장이 중요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회무 진행을 허기용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다.
- 양준화 사무총장이 2022년 사업 및 예산(안)을 제안·설명하다.
- 위원회, 네트워크 사업계획을 제현수 교육위원장, 추명구 생태교통, 김대광 생물다양성, 오용석 기후에너지, 류명화 성평등의제 네트워크 위원장, 정책위원회 오수길 위원장을 대신하여 양준화 사무총장이 발표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계획은 박훈 협력실장이, 2022년 세부사업과 예산계획은 박정진 사무국장이 발표하다.
- 허기용 운영위원장이 추가 의견을 확인하였고,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기타안건

- 전주 강소영 대의원이 성평등 네트워크에서 연구된 조직운영방을 지역으로 확산시켜달라는 의견에 양준화 사무총장이 성평등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다.
- 화성지속협에서 법제정관련하여 기본조례 제정안도 함께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기본조례안이 있는 곳은 지방의회에서 기본법이 반영된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준화총장이 설명하다.
- 전주 강소영 대의원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TF가 만들어져서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지역에 배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양준화 사무총장이 관련 내용관련하여 학회와 협력하여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다.
- 김태윤 공동회장(제주)이 표준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양준화사무총장이 설명하다.
- 허기용 운영위원장이 추가 의견을 확인하여 의견없음으로 기타안건토론을 종료하다.

Ⅴ. 폐회선언

- 허기용 운영위원장이 제23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2022년 1월 11일 3시 28분)

이성중 대의원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의장과 회의록 서명위원 2명이 서명하다.

2022년 1월 11일

총회 의장	김영진	전국협의회 상임회장	(인)
회의록 서명위원	제현수	원주협의회 사무국장	(인)
회의록 서명위원	김대광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인)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보고서 : 사업감사

· 감사범위 : 2022.01.01. ~ 2022.12.31.
· 감사일시 : 2022.12.26. ~ 2022.12.27.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단과 위원, 실무자 등 지속협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사업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시행,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국무총리실 이관 등 새로운 정책 여건 속에서 활동을 이어 온 한 해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적 목소리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의회(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고 향후 정책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최·주관기관 간 협력으로 개최지의 도지사와 시장을 물론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인사,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 등에서 책임있는 정책결정자들이 대회에 참여하였고, 많은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교류하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나누었으며, 다양한 대회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정책실에서 좀 더 강화된 정책연구단을 통해 조직혁신TF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역의 변화된 상황에 따른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동회장단회의, 사무국처장단회의, 권역별 토론회, 3차례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제안 되고 논의된 내용들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우리 협의회의 새로운 활동 방향으로 정리되고 또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미있는 결실을 기대합니다.

4.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위원회와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의제들이 지역으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단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으로 RE100시민클럽과 에코바이크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는 활동과 지역의 시민 생물다양성 탐사가 협의회 내에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교육사업인 차세대 탄소중립 생태교통 리더 활동가 양성과정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협의회 활동을 생태교통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제작 된 매뉴얼이 지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캠페이너들을 발굴,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위탁을 통해 지방정부와 상호협력적 관계 설정과 공동사업추진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재 제작과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협의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 지방정부협의회 수상 부문을 추가하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노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6. 연초에 발간된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L-SDG) 이행매뉴얼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현안 과제를 연구용역 형태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였습니다. 지역의 SDGs 수립, 지표관리, 시민참여 워크숍 운영 등 협력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해졌습니다. 이는 우리 협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이기도 하나, 용역의 속성과 협의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의회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기본적 책무에 사무국이 집중할 수 있는 실무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8. 2022년도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지방선거 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본법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되었으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상황의 변화가 온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힘이 발휘된다면 지혜로운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협의회가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월 2일

감 사 박연희 (인)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

· 감사범위 : 2022.01.01. ~ 2022.12.31
· 감사일시 : 2023.01.02. ~ 2023.01.05.

감사 김한수는 2022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결산감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본 감사는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수입, 지출결산을 감사한 결과, 사업추진에 관한 회계처리와 경비사용에 대하여 체크카드 사용, 은행 간 이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등 적격하게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리가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비수입을 비롯한 기타수입 등 일반재정수입 229,048,451원과 환경부 공모지원사업 278,791,938원(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공모전 사업, K-SDGs목표별 민관협력 모델발굴 사업, L-SDGs 수립지원사업, 민간생물다양성조사 연구용역), 환경보전협회 공모지원사업 77,000,000원(차세대환경교육 및 생태교통 리더양성교육 2021, 2022), 지역공모지원 연구용역사업 58,079,780원 (의왕SDGs, 충주SDGs, 운봉읍탄소중립계획, 당진ESG지표조사, 대구지속가능보고서 연구용역), 위탁 운영사업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운영 90,043,670원, 총 503,915,388원의 지원사업 재정수입이 발생하여 2022년도 수입액은 732,963,839원 입니다. 이중 일반재정으로 167,053,681원, 공모지원사업 400,371,718원, 위탁운영사업 79,252,088원의 지출이 발생, 2022년도 총 지출액은 646,677,487원이 집행 되었으며 일반재정 61,994,770원, 공모지원사업 13,500,000원, 위탁운영 10,791,582원 총 86,286,352원이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 감사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관련 수입과 지출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수입 및 지출 관련 증빙도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보고서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월 6일

감 사 김한수 (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협약 변경에 따른 협약문서명 반영하여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통일
- 환경부에서 중앙정부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로 표기하여 법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 업무 이관 명시
-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숙의공론장과 이해관계자 포함
-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

2) 협의회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분소 사무소 설치 조항 신설(제5조 사무소)
- 회원 협의회 위원과 활동가 기본의무교육 명시를 통해 역량강화 및 교육체계 근거 마련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총회 대의원의 범위를 회원 협의회와 부설기관 및 분과위원회(네트워크)의 장 포함. 전국협의회 구성원 참여 구조 개선(제13조 총회)
- 온라인 총회 개최 근거 마련(제1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개정내용

원 안	개 정 안	비고 (개정이유 / * 검토 의견)
제1조 (명 칭)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 영문: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LSAK)라 칭한다.	제1조 (명 칭)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약칭 '전국지속협', 영문명**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LSAK)라 칭한다.	* 약칭 통일 필요여부 검토 전국지속협 이하 표기는 2조로 이동
제2조 (목 적) 전국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와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 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와 지방의제2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전국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협약 변경에 따른 협약문서명 반영

원 안	개 정 안	비고 (개정이유 / * 검토 의견)
제3조 (성 격) 전국협의회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 이하 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발전 실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3조 (성 격) 전국협의회는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포함**. 이하 **지역**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협력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지방 보다는 지역이 올바른 성격규정 전국협의회(회)와 지역협의회(회원)의 구분 사업에 중복 포함된 내용 삭제
제4조 (사 업)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국내·외 지자체, NGO들 간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3.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4.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협력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6.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업	제4조 (사 업)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부협력 사업** **2.** 지속가능발전과 **SDGs** 추진관련 국내·외 지자체, NGO**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및 숙의공론 활성화** **3.** 지속가능발전과 **SDGs**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4.** 지속가능발전과 **SDGs**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5.**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협력 **6.**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7.**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기본법 반영하여 이해관계자 및 숙의공론 포함 지방의제21을 SDGs로 항목 번호변경 3조 성격의 사업내용
제5조 (소재지) 전국협의회의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5조 (사무소) 전국협의회의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내에 **두고,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가능 조항 신설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전국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협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전국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하 표기변경

원 안	개 정 안	비고 (개정이유 / * 검토 의견)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의원 2인을 파견하여, 총회 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전국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전국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전국협의회의 정관 등 제 규정 준수 및 의결사항 이행 의무 5.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6. 회비 미납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의원 2인을 파견하여, 총회 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전국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전국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전국협의회의 정관 등 제 규정 준수 **및 기본교육 등** 의결사항 이행 의무 5.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6. 회비 미납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	* 기본교육 의무화 필요하나 정관포함 여부와 시기 논의필요.
제13조 (총 회) 총회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총 회) 총회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담당공무원 1인, **부설기관 및 분과위원회(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성한다.	환경부를 중앙정부로 표기 * 총리실과 회참여협의 미완료 정책·교육위(자문위)와 네트워크 위원장 대의원 자격부여
제1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총회 소집이 장시간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상임회장의 소집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 총회 개최 규정 신설

원 안	개 정 안	비고 (개정이유 / * 검토 의견)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환경부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의 장,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네트워크 대표 등으로 한다. ②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서장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외업무 수행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중앙정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의 장,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네트워크 대표 등으로 한다. ②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서장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외업무 수행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를 중앙정부로 변경
제23조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은 전국협의회 정회원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국)장이 일원이 된다. ②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및 조직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기구 성격을 가진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은 전국협의회 **회원인 지역협의회** 사무처(국)장이 일원이 된다. ②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및 조직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기구 성격을 가진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하 표현 적용
제24조 (고문 및 자문위원단) ① 전국협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환경단체 및 학계의 원로, 기업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자문위원단은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고문 및 자문위원단) ① 전국협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환경단체 및 학계의 원로, 기업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자문위원단은 지속가능발전과 **SDGs**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의제21을 SDGs로 변경. 연임가능 규정 신설.

원 안	개 정 안	비고 (개정이유 / * 검토 의견)
제28조 (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 항목은 사업과 회계 분야로 한다.	제28조 (감사) ① **감사의 항목은 사업과 회계분야로 하며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항목통합 회계감사와 사업감사 개최시기 표기
제30조 (재원의 조달) ① 전국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분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환경부의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재원의 조달) ① 전국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분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중앙정부**의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환경부를 중앙정부로 대회 명칭 변경 반영
제31조 (정부의 참여 및 협조)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위원회, 사무총국,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활동 등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는 전국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31조 (정부의 참여 및 협조)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위원회, 사무총국,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활동 등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정부**는 전국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대회 명칭변경 반영
제32조 (준용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좌동	
부칙 (2000.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 、 、 부칙 (201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0.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 、 부칙 (201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 안	개 정 안	비고 (개정이유 / * 검토 의견)
제4조 3호 "수범사례"를 "모범사례", 7호 "운영세칙"을 "세부운영규정", 제11조 ①항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추가, 제19조 ②항 "지방의제21"을 "전국협의회", 제21조 5호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 5호, 6호를 6호, 7호로 변경, 제23조 ③항 "지방의제21 공통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제27조 ①항 "사무처"를 "사무총국", "개시 2개월 전까지"를 "개시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 3호 "수범사례"를 "모범사례", 7호 "운영세칙"을 "세부운영규정", 제11조 ①항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추가, 제19조 ②항 "지방의제21"을 "전국협의회", 제21조 5호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 5호, 6호를 6호, 7호로 변경, 제23조 ③항 "지방의제21 공통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제27조 ①항 "사무처"를 "사무총국", "개시 2개월 전까지"를 "개시 20일 전까지"로 한다. **부칙 (2023. 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총회 의결 개정 내용 표기**	부칙 및 경과규정 추가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예산(안)

전국협의회 비전

○ **비전 :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
○ **미션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주류와와 지역화**
○ **과제 : 국가 및 지자체 이행시스템 구축협력, SDGs이행플랫폼구축, 협의회 역량강화**

■ 2023년 주요 사업

□ 유엔 (UN SDGs) - 국가 (K-SDGs) - 지역(L-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시스템 구축 협력

· 기본법 시행에 따른 SDGs 확산의 계기
- 22년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SDGs를 추진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로서 유엔의 SDGs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추진조직(위원회, 추진단)구성에 협력, 정부시책사업발굴, 지방정부 이행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등 폭넓은 추진지원체계 마련, 정책제안 등 협력 필요.
- SD행동 실무지원, 국조실 협업, 지방정부 이행촉진, SD대상 등 사례발굴, 법률상 국가와 지자체의 인증사업 대응, 각종 정책개발과 교육홍보 사업 추진

· 지방정부의 SDGs안착 노력
- 기본법과 시행령, 기본조례의 제정 등으로 지자체의 SDGs 이행이 의무적인 지방사무가 됨.
- 기 작성된 지방SDGs 추진 매뉴얼(환경부 과제-협의회 수행)이 지자체와 우리협의회의 공식 업무메뉴얼 임을 인식하고 지역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협의회 사업으로 규정됨.
- 지방정부와 지역협의회가 협력적으로 이행체계 구축과 이행, 지표개발과 모니터링등의 과정 추진을 위해 전국차원의 추진모델 개발(국조실 협력)
- 사업협력과 정책 제안, 에 협력하고, 구현을 적 지속가능발전 제도화과정에서 지방의 역할강화, 시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완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정된 규정의 지역적용과 확산을 위해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플랫폼 (SDGs Action Platform) 구축

· 법제도적 이행 시스템구축과 정책추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임.
·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주간, 지역협의회 활동, 지속가능발전대학 등 주요 일정에 SDGs 홍보
· 우리집SDGs를 단체, 마을SDGs 등 단위별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 및 문화 확산
· L-SDGs추진 지원단 지속운영 및 지역 전문가 발굴, 지자체(지역협) 컨설팅 및 지역별 간담회 추진, SDGs 이행 매뉴얼 및 역량강화 진행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실천사례 공유, 소통과 홍보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역량강화

□ 지역협의회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설치된 민관협력기구이고, 전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이행에 협력하기 위한 연대체.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본법에 규정된 법정단체이며, 조례로 설치한 공적기구로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위원회구성, 시책의 시행, 숙의공론화, 교육홍보 등 법에 규정된 제반의 정책시행)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민과 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 협의회의 법적 역할은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숙의공론장 운영 협력 등이 있음.

□ 위상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사업추진 매뉴얼의 개발, 기본교육과 업무교육 지원 실시
- 협의회 관계자 협치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 협의회 및 위원회 역할정립과 협력관계 구축
- 숙의공론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위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등
- 시책사업과 네트워크, 분야별 이슈와 SDGs 연계전략 마련
- 지표점검 및 모니터링, 시민참여 연구사업 추진교육

□ SDGs 주요 의제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목표별 국내외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안.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연계강화를 위한 사무국 위탁운영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 사업 계획(안)

구분	사업	추진 계획	비고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	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 공동회장단, 전국사무국처장단, 협의회 회장단 회의 · 정책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역화 전략(국회, 정부, 시민사회 대응활동 지원)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 협의회 정책역량 보완 · 교육위원회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체계화 - 지속협 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구조 마련 - 위원, 활동가 기본교육과 시민교육 교육역량 강화	
	의제별 네트워크	·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 생태교통 네트워크 · 성평등의제 네트워크	
	현황 정보	·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추진 현황 조사 ·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자료 발굴 및 공유 ·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료 체계 구축	
지속가능 발전 협력사업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 2023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 제25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국내·외 교류협력	· 지역협의회 주관 전국단위 사업 공동주최 · 지역대회 개최 협력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사업 추진 · 국제 포럼 및 세미나 참석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제5회 K-솔라리그 협력 -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현안 실천	· 지방정부협의회 사무 위탁 운영 · RE100시민클럽 사무국 운영 · L-SDGs 수립지원 컨설팅 · K-SDGs 환경포럼 ·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사무국 운영	
교육 및 홍보	역량강화	·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 활동가대회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및 교류 ·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위원, 행정, 활동가) 역량강화	
	홍보 ·미디어	· 협의회 홍보영상, 리플릿 제작 배포 · 홈페이지,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운영 · 지속가능발전포털 협의회 소식란 운영 · 뉴스레터(월 1회) 발간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위원회 운영(회원)	예산액 : 10,000,000원
사업목적	· 지역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사업목표	· 정기적 회의 운영과 교류를 통한 전국지속협 소속감 증진 · 회원협의회에 지속가능발전 이슈 및 소식 제공, 협력 관계 설정
사업내용	· 공동회장단 회의 - 연 2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 지속협 활동 및 주요 이슈 논의 · 운영위원회 - 연4회 개최 - 사업 방향 및 운영 사항 결정 ·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 협의회 추진 사업 공유 - 협의회 공동 대응 이슈 논의 ·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 지역 지속협 회장단 교류 · 지역 지속협 협력 및 지원 - 경기, 강원, 영호남, 인천, 충청권 대회 - 지역 협의회와 공동 행사 주최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공동회장단, 운영위원회 · 전국 지속협 사무국처장단
사업일정	· 1월 정기총회 결과 공유 및 회비 납부 안내 · 1월 120차 운영위원회 · 4월 121차 운영위원회 · 5월 1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 7월 122차 운영위원회 · 9월 공동회장단 회의 · 11월 123차 운영위원회, 2차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 12월 총회준비 위원회
예산	· 공동회장단 간담회, 운영위원회,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운영 10,000천원
사업성과	· 지속가능성보고서 · 회원협의회 명단
성과의 활용	·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하여 전국-지역 지속협간의 이해관계 파악

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예산액 : 6,000,000원

사업목적	· 정책위원회 - 법제화 추진 대응 전략 마련(국회, 정부, 시민사회 대응활동 지원),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기타 협의회 정책역량 보완 · 교육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교육 체계화, 지속협 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구조 마련, 위원, 활동가, 시민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역량
사업목표	· 정책위원회 - SDGs 지표와 수립과 실천의 연결 - 각 정책위원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 교육위원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30 지속가능발전교육 비전 마련 -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내용	· 정책위원회 - 지속협의 민관협력 실천력 제고방안 토론회 - 지역별 실천사업의 목록화 - 21대 국회에 지속가능발전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에 협력 · 교육위원회 - 활동가 교육 커리큘럼 구성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30 지속가능발전교육 비전 마련 - 지속가능발전교육 대표콘텐츠 개발 - 국가환경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ESD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교육, 콘텐츠 제공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기본법 토론회, SD학술대회
사업추진일정	위원회별 회의 운영 · 3월 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시민 실천방안 모색 간담회' 교육위원회: 활동가 교육 커리큘럼 구성 · 하반기 위원회별 정기 회의 · 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임시회의
예산	· 자문 위원회 운영 지원 6,000천원
사업성과	· '교육-행동-변화' '콘텍트-온텍트-홈텍트' 지향하는 SDGs 이행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성과의 활용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의체에 SDGs 방식의 적용 확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활동가 교육 교재로 활용

의제별 네트워크

예산액 : 8,000,000원

사업목적	· 주제별 네트워크를 통한 의제 발굴 및 공동 추진
사업목표	· 네트워크 별 공동 사업 추진 · 네트워크와 연계 사업을 통한 지속협 교류
사업내용	· 생태교통 네트워크 -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공동 사업 추진 -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 - 생태교통포럼, 생태교통 도시 지수(지표) 공동개발 ·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 분기별 네트워크 정기 회의, 활동가 워크숍 -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RE100시민클럽 · 성평등 네트워크 - 네트워크 회의 및 지역 사례 워크숍 운영 -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성인지 체크리스트 제작 ·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 분기별 회의 진행, 네트워크 워크숍 - 2023 생물다양성 포럼 - 인식증진 사업(생태계 서비스)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생태교통네트워크, 기후에너지네트워크, 성평등네트워크,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 주제별 공동 사업, 대한민국 대회 주제 세션 운영
사업일정	· 2월 기본 및 실천 계획 수립 · 3월 네트워크별 회의 운영 · 4월 생태교통 지역별 행동 · 6월 네트워크별 회의 및 워크숍 운영 · 9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네트워크별 회의 운영 · 11월 2023 한·중·일 생물다양성 포럼 · 12월 네트워크별 회의 운영, 2023년 운영 계획 수립
예산	· 네트워크 운영 지원(네트워크 당 200만원) 8,000천원
사업성과	·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결과 · 생물다양성 포럼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인지 체크리스트 · RE100 시민클럽
성과의 활용	· 그린뉴딜, 탄소중립 사례 확산 · 지역 지속협 사업 발굴 가이드 라인 제시

현황·정보	예산액 : 2,000,000원
사업목적	· 지역요구 대응능력 고도화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한 자료 구축
사업내용	· 지역자료 현황 조사 - 지역 협의회 사업 및 현황 조사 ·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료 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 - 지역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F&Q 작성 · SDGs 추진 현황 관리, 편람 관리 - L-SDGs 수립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 도서 및 자료관리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국무조정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계청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일정	· 연중 지역지속협 사업 및 현황조사 지역 FAQ 작성 및 최신화 · 7월 현황조사 자료 지역배포
예산	· 지역 현황조사 1,000천원 · 지속가능발전 업무 매뉴얼 구축 1,000천원
사업성과	· 지역 지속협에 대한 최신자료 구축 · FAQ 작성으로 대응능력 향상 · 최신화된 L-SDGs 추진현황 자료
성과의 활용	· 지속협별 운영근거자료 · 지역요구능력 고도화 · L-SDGs 현황 최신화로 국제사회 동향 공유에도 활용가능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공모전	예산액 : 205,000,000원
사업목적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 주체 간 교류와 협력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
사업목표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련하여 공무원, NGO 등 활동 주체간 교류와 대화의 장 마련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 공모전 지원 및 사례 공유
사업내용	·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23. 9. 순천 / 2박 3일 - 주제 : 생물다양성 · 기획 및 준비 회의 -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북, 전주지속협과 공동사무국 구성, 기획 및 준비 회의 추진 - 지속협과 이해관계자 그룹간의 역할 논의 · 이해관계자 컨퍼런스(주제별 세션 : 교육, 포럼, 세미나 등)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 흐름 이해 및 이행력 증진 방안 토의 -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활동가, 행정, 기업 등 교류 -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현안 발굴 및 정보 제공 · 전시, 체험, 관련업체 부스 운영 - 17개 목표와 관련된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기업의 부스 운영 · 제25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사례 공모전 - 시민, 단체, 지자체, 기업의 범위에서 접수 - 3차에 걸친 심사(서면, PT, 최종)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선정 -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시상식을 통해 홍보효과 기대 - 우수사례집 발간(국문, 영문)을 통해 해외에 홍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공모전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공동사무국 :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전라남도, 순천시, 국무조정실 · 지역 지속협 : 주제 세션, 행사 참여 · 지방정부, 시민사회, 상공회의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봉센터, SDSN, SDSN Youth korea, UN 글로벌 임펙트,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속가능발전캠퍼스협회, 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공모전 홍보 및 사례 발굴
사업일정	· 1월 기본 및 실천 계획 수립, 신청서 및 평가 서식작성 · 2월 공동사무국 기획회의 개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확정 · 3월~5월 세부 계획(안) 수립 우수사례 공모전 공지 및 접수 · 5월~7월 서면심사, PT심사, 최종심사 · 7월 대회 참가자 모집 · 8월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 · 9월~10월 대한민국대회 운영 평가 공모전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작성 · 11월 우수사례 영문 번역 · 12월 우수사례집 발간
사업성과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결과보고서 · 세션별 결과보고서 · 우수사례집(영문, 국문) · 양질의 우수사례발굴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으로 시민, 대학생 등에게 지속가능발전 개념 홍보가능)
성과의 활용	· 주제별 논의 결과를 통한 의제, 사례 발굴 및 활용 ·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국내 지속가능발전 사례 공유 · 사례집 발간을 통해 국외에 국내 사례 공유 ·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예산액 : 5,000,000원

사업목적	· 지속가능발전 활동 지역 확산 및 연대 · 국제동향의 지역전파, 지역활동의 국제전파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 기후위기대응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후위기대응 활동 (그린뉴딜, 탄소중립) · SDGs 관련 국제사회 뉴스 지역에 공유 · 지역협의회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유
사업내용	· 지역협의회 주관 전국단위 사업 공동주최 · 지역대회 개최 협력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사업 추진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대 - 제5회 K-솔라리그 협력 -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 국제 포럼 및 세미나 참석 · 국제 동향 자료 공유 -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관련 자료를 제공 - UN SDGs 플랫폼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공모전 우수사례 공유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지속가능발전행동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UN DESA, UN ECOSOC 등 국제기구 · UN SDGs 공식 플랫폼
사업일정	· 연중 지속가능발전행동 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참여 국제 포럼 및 세미나 참석 국제 동향 자료 공유
사업성과	· 연내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사례 SDGs 플랫폼 업데이트 · UN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웨비나 등 참석을 통해 국제동향 자료 공유(반기별 1회)
성과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지역 지속협 연계성 강화 · 지속가능발전 자료 및 이슈에 대한 공유 · 우리 협의회 활동에 대한 국제사례 홍보

현안실천	예산액 : 10,000,000원
사업목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역량 제고
사업목표	· K-SDGs(제4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 협력 · 국가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 L-SDGs 지원
사업내용	· 환경부 협력과제로 “K-SDGs 환경포럼”추진 · 지속가능발전 제도화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주요기구와 협의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사업 추진 : UN 글로벌콤팩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한국시민사회활성화 네트워크, SDGs시민넷,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속가능발전캠퍼스협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100시민클럽 전국 사무국 운영 · 지방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지원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실천 거버넌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정립 방향 모색 · 국무조정실,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및 시책발굴과 정책 추진 협력 · 한국 시군구청장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중립 연대 · RE100시민클럽 :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추진일정	· 연중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토론회 · 연중 K-SDGs 환경 포럼 개최 · 연중 RE100시민클럽 사무국 운영 · 연중 L-SDGs 추진단 운영
사업성과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협의회 정의 및 역할) · 지역별 기본조례, 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 국회토론회 개최 · 탄소중립 시민 실천 RE100시민클럽 발굴
성과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제도화 - 시행령, 지자체 표준조례, 지자체 평가, 지원예산 등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과제 및 L-SDGs 이행 확산 (L-SDGs 수립 지자체 현황 정리 및 공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예산액(수탁) : 90,000,000원
사업목적	·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연대, 협력, 교류 강화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안정적 운영, 활동 기반 구축 · 기본법 추진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확대, 국제협력 강화
사업내용	· 정기 사무 - 2024년도 정기 총회, 실무 협의회,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활동 홍보, 교류 -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확대(지속협 활동지역 중심) -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등 공동, 연대 행사 개최 및 참여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추진 체계 구축 대응 - 실질적인 지방 추진체계, 지방정부(지속협) 지원 확대 등 건의 - 국회 토론회, 공동 건의문 채택(지방정부협의회-지속협)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역 순회 설명회 공동 개최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정부(국무조정실), 국회·지방의원(기본법 관련 정치권)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발전학회, 청년협의체 등
사업일정	· 2월 2023년도 정기총회, 국회토론회, 지역설명회 · 3월 지역설명회,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 5월 상반기 정책포럼 · 7월 2023년도 임시총회, 회원 지방정부 확대 조직사업 · 8월 실무자 역량강화, 조직 사업, 전국대회 공동참여 · 9월 하반기 정책포럼, 2024년도 예산 편성 대응 · 11월 공무원-실무자 파트너쉽 강화 · 12월 2023년도 활동보고서 발간, 평가 및 차기 수탁 준비
예산	·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협의회 사업비(정책 토론회, 홍보 등) 40,000천원
사업성과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 2023년도 활동보고서, 2024년도 안정적 사업 수탁
성과의 활용	·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통해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 지방정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과 확산 기여 · 기본법 제정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제 대응 · 상호 교류, 학습 확대 통한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역량강화	예산액 : 5,000,000원
사업목적	· 협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목표	· 기본 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업무 매뉴얼 추진 · 연차별 교육프로그램 진행 · 지속가능발전 교육 온라인 상시 교육 프로그램 구축
사업내용	· 활동가 대회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및 교류 · 신규 활동가 및 협의회 위원 교육 - 지속가능발전과 협의회에 대한 이해, 실무 능력 강화 · 협의회 리더 양성 교육 (3년~5년 활동 실무자 대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견 활동가 대상 리더 양성 교육 진행 - 조직 관리, 사업 기획 등 리더 양성을 통한 조직의 지속가능성 향상 ·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시 교육 체계 마련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광역, 기초 지속협 실무자 및 위원 :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지역 지속협 : 활동가 대회 공동 추진 및 온라인 플랫폼 추진 참여
사업일정	· 2월 기본 계획 및 실천 계획 수립 · 4월 신규 활동가 교육 · 6월~9월 협의회 리더 양성교육 추진 · 10월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대회
예산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0천원 ·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대회 3,500천원
사업성과	· 실무자 기초 교육 커리큘럼 · 연차별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성과의 활용	· 신규 및 기존 활동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협의회 인적 네트워크 구성 · 중간급 활동가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리더 양성

홍보·미디어	예산액 : 15,000,000원
사업목적	· 지속가능발전 정보·소통의 플랫폼
사업목표	· 지역 활동을 담은 소식지 발간, 공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대중 노출 증대
사업내용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참여 정보 및 지속협 활동 공유 · 지속가능발전 정보 공유/뉴스레터 - 전국협의회 소개자료(리플렛) 정기적 업데이트 - 매월 뉴스레터를 통해 지역 지속협과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이슈 소식 공유 - 뉴스레터 작성 필진 모집을 통한 이슈, 소식 발굴
주요 파트너 및 역할	· 지역 지속협 : 지역 활동 내용 공유
사업일정	· 연중 홈페이지, SNS 운영, 매월 뉴스레터 발송, SDGs 홍보물제작, 판매
예산	· 홈페이지 및 SDGs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10,000천원 · 뉴스레터 발송 500천원 · SDGs 홍보물 제작, 판매 4,000천원 · 온라인 홍보비 500천원
사업성과	· 소식지, 뉴스레터, SNS 구독자 수 · 소식지, 뉴스레터 발간 수 · 게시글 조회수 · 지속협 홍보 리플렛
성과의 활용	· 지속가능발전 및 목표 전국민 인식 확산 · 협의회 활동 홍보를 통한 위상 강화

202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안)

1. 수입 예산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총 계	**700,000,000**	
일반	**197,000,000**	
경상수입	137,994,770	
회비	76,000,000	80여개 지역
이월	61,994,770	전년도 일반재정 이월금액
후원 및 기타	59,005,230	
일반후원	1,000,000	
온라인교육플랫폼	20,000,000	온라인교육플랫폼
사업수입 등 기타	38,005,230	사업수입 잔액, 예금이자 등
지원	**503,000,000**	
공모 지원 및 연구 사업	413,000,000	중앙정부 사업비 및 연구용역
전국대회&공모전	200,000,000	국무조정실
연구용역(K-SDGs 환경포럼)	100,000,000	환경부
환경교육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60,000,000	환경교육센터
지역SDGs 지원사업	39,500,000	
연구용역(대구지속가능성보고서)	13,500,000	22년도 이월금
위탁운영	90,000,000	사무위탁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위탁	90,000,000	(22년도 이월금 10,791,582포함)

2. 지출예산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총 계	**700,000,000**	
사 업 비	**569,000,000**	
자체사업	66,000,000	
지속가능발전활성화	26,000,000	운영위, 회장단, 국처장단 10,000,000 위원회 운영, 의제별 네트워크 14,000,000 현황·정보 2,000,000
협력사업	20,000,000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전 5,000,000 현안실천 10,000,000 국내·외 교류협력 5,000,000
교육 및 홍보	20,000,000	역량강화 5,000,000 홍보·미디어(SDGs 온라인 플랫폼 구축) 15,000,000
공모 지원 및 연구 사업	413,000,000	
전국대회&공모전	200,000,000	사업성경비 80,000,000 임차료, 유인물비, 전시 홍보, 회의 및 대회진행비 등
연구용역(K-SDGs환경포럼)	100,000,000	사업성경비 50,000,000 현황조사비, 회의비, 유인물비 등
환경교육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60,000,000	사업성경비 16,000,000 현황조사비, 교육진행비, 유인물비 등
지역SDGs 지원사업	39,500,000	지역 SDGs 수립 용역 지원
연구용역(대구지속가능성보고서)	13,500,000	22년도 이월금
위탁운영	90,000,000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위탁	90,000,000	사무운영비 50,000,000 지방정부협의회 사무 위탁운영 (22년도 이월금 10,791,582포함)
관리운영비	116,167,200	
인력운영비	70,167,200	
인 건 비	51,147,200	일반재정분
퇴 직 금	19,020,000	
일반운영비	46,000,000	
업무추진비	4,000,000	회비, 단체후원금 등
제세공과금및수수료	4,500,000	인터넷·통신·우편·송금수수료·각종법인세 등
일반수용비	1,500,000	사무용품 및 복사기유지비 등
관리운영비	15,000,000	임대·관리비, 운영비 등
사회보험료	21,000,000	사측부담
예 비 비	14,832,800	

임원선출

○ 상임회장
○ 사업감사
○ 12대 사무총장

임원선출

가. 관련규정

: 정관 제10조 ③항과 ⑤항, 제11조 ①항, 제13조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상임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공동회장은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새로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상임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과 감사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의 임기는 광역협의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 (총 회)

총회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

나. 선출절차

ㅇ 상임회장은 공동회장단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ㅇ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같다.

ㅇ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상임회장

▪ 공동회장단 회의 추천

나. 사업감사 후보

▪ 박연희 사업감사 후보 (2021년 위촉)

(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SD 위원회 위원
(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협력분과 전문위원
(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국장
(전)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전) 유럽연합 (EU) 사업, 'Locw Carbon Action (LCA) Korea'의 Key Expert

다. 12대 사무총장 후보

▪ 이동준 후보

(현)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현) 충남광역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위원장
(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총무위원)
(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PART 04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돌아보기

1. 2022 활동 및 주요 성과

· 한눈에 보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 국내외 교류협력
· 현안실천
· 교육 및 홍보

2. 재정 및 조직 관련

· 재정운영
· 지속가능한 조직 구성, 인권, 노동, 소통
· 지속가능성 확산, 정보, 환경보호

2022 활동 및 주요 성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주요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든 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따릅니다.

보고 항목

· 한눈에 보는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022 주요 활동
· 2022 활동 성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눈에 보는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한눈에, 관계자들 한자리에!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 지속가능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대한민국 내 지속가능발전 활동 축제의 장 운영
- 라운드 테이블, 이해관계자 컨퍼런스, 타운홀 미팅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데모여 공동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방법 모색. 지속가능발전 보령 선언 선포
- 대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기념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 우리집SDGs 테스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실천 ACT4SDGs와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지속협의 뿌리는 지방정부, 손발을 맞추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위탁 및 협력사업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 위탁(2022-2023)
- 지속가능발전 주요 파트너인 지방정부와의 협업 확대와 기본법 이후 공동 대응
- 기본법 관련 권역별 토론회, 기본법, 시행령 대응 지속가능발전교육교재 제작 등 협력사업 추진

기본법 지방이행, 협의회의 길을 찾다!
타운홀미팅, 이해관계자 워크숍,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권역 토론회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과 의견수렴 장으로 숙의공론장 기회 마련(총 13회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운영)
- 지속가능발전목표 프레임 워크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 및 의제 발굴, 기본법으로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과 의견 수렴을 통한 인식 증진

SDGs업무추진 지침, 정부메뉴얼 함께 만들다!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매뉴얼 개정판 발간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대해 기본법 체계를 반영한 매뉴얼 개정
-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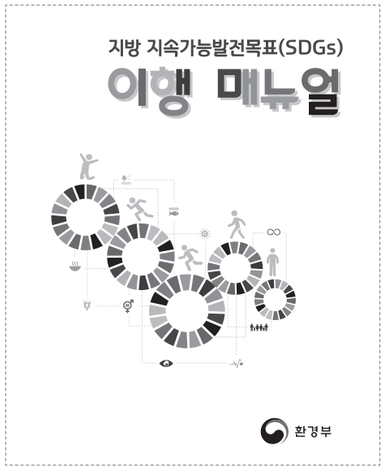

지자체에서 시행할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시책사업은 이런것!
K-SDGs 민관협력 목표별 대표사업 모델화

- K-SDGs의 지역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 17개 목표별 대표사업 모델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업 가이드 제공
-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우수사업 발굴(51개)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업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목표별 대표사업 선정. 이를 통해 지역에서 시책사업 추진시 참고 자료 활용.

전국이 들썩! 수송분야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교통 (리더양성, 에코바이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바이크 출퇴근 챌린지 추진
- 생태교통 리더 양성을 통해 지역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전국의 생태교통 활동 네트워크 조직

온실가스. 문제는 에너지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솔라리그, RE100)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동주최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RE100시민클럽 사무국 운영 및 지역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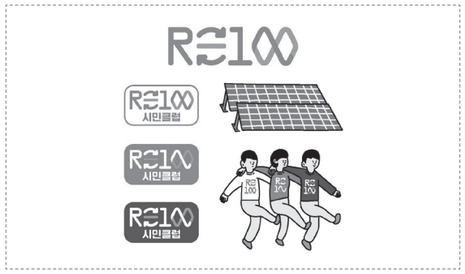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모든 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지역 소통과 교류 확대 (월간지속협, 뉴스레터)

- 지역협의회 활동가들의 경험을 듣고 지역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지역협의회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매월 뉴스레터 발간
- 광역 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사무총국-사무처 간담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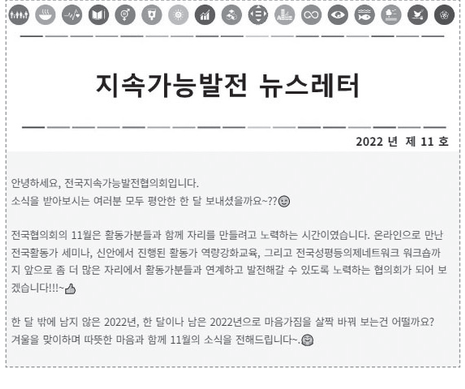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뉴스레터

2022 년 제 11 호

안녕하세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소식을 받아보시는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한 달 보내셨을까요~??

전국협의회의 11월은 활동가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전국활동가 세미나, 신안에서 진행된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워크숍까지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리에서 활동가분들과 연계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협의회가 되어 보겠습니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22년, 한 달이나 남은 2022년으로 마음가짐을 살짝 바꿔 보는건 어떨까요?
겨울을 맞이하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11월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협의체를 넘어 국가민관협의체로!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참여와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 지속가능발전 추진 동력 확대를 위해 연계 기관과 뉴 거버넌스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기!
국무조정실 정책 제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 협력

- 지속가능발전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과 업무 협력 진행
-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사업 제안
- 국회 상임위 변경(환경노동위->정무위)에 따른 국회 정책협의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 현황·정보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생태교통 네트워크,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전국성평등의제 네트워크,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 지역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향 결정, 주요사업 집행방향 설정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운영위원회 - 대상 : 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환경부 공무원, 네트워크 위원장,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 회의 개최 : 6회 - 내용 : 전국협의회 주요 사업 집행방향 결정	- 회의 운영 : 43 - 포럼 운영 : 4 - 총 참여 인원 : 200여명
공동회장단 및 사무국처장단 운영 - 대상 : 공동회장단 및 사무국처장단 - 회의 개최 : 2회 - 내용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 6.3~6.30, 15개 도시, 2,270명 성인지체크리스트 작성 및 평가 보고서 발간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 5회 - 포럼 개최 : 1회 - 학습회 개최 : 1회 - 내용 : 전국협의회 사업 방향성 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회와 포럼 등	**추진기구 현황조사** - 응답수 : 99개 - 내용 : 일반현황, 조례현황, 지역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여부, 예산, 추진사업, 발간자료, 정책대응 현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정책 대응 현황** - 응답수 : 53개 -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추진 여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여부, 전담부서 설치 및 현황
네트워크 운영 - 대상 : 지역협의회 활동가 및 위원 - 회의 개최 : 28회(4개 네트워크 총합) - 워크숍 개최 : 2회 -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워크숍 :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생물다양성과제, 6.23~6.24, 부산, 80명 생물다양성 포럼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생태계 서비스, 12. 14, 청주, 50명 - 전국성평등의제 네트워크 워크숍 : 연대할수록 강해지는 우리, 성평등, 11.24!11.25, 광주, 60명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현황조사 - 조사횟수 : 2회 - 조사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정책대응 현황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 조사 및 홍보·교육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민관협력, 지속가능한 도시, ESD, 청년, 에너지 전환

·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지역 발전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 확산시킴으로써 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 주제 :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 · 일시 : 2022. 08. 11 ~ 08. 13 (3일간) · 장소 :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 보령시일원 · 참여인원 : 5,00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사전프로그램 : ACT NOW(ACT4SDGs),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리집 SDGs 공동조사 - 공식행사 : 기념식,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 및 우수사례발표, 지속가능발전 기조연설, 성과보고 및 차기 개최지 발표 등 - 주제컨퍼런스 : SDGs 이해관계자 컨퍼런스, 지속가능발전 학술대회, 지속가능발전 타운홀 미팅 - 현장워크숍 :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관람, 현장투어(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 부대행사 :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전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자료전시,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성과 공유회 등	· 추진단 운영 : 20회 · 주관기관 확대 : 10개 기관. 협력 2곳 · 사전프로그램 : 3회 · 발굴된 의제(이해관계자 컨퍼런스) : 11 · 참여한 이해관계자 : 9 · 라운드 테이블 : 1회 · 숙의공론장 시범 운영 · 성과공유회 : 2회 ·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20개 발굴 · 소모임 4, 단체 10, 기업 4, 지자체 2 · 수상 사례 확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신설 · 공모전 우수사례집발간(국문,영문)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 목적: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사례 발굴과 확산 · 응모분야: 소모임, 단체, 기업, 지자체 · 총20개 사례 선정 · 자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 22년 4월 · 공모전 접수 진행 : 4,27 ~ 6,30 · 총51개 사례 접수 · 공모전 심사 : 1차 서면심사, 온라인 투표, 2차 발표심사, 최종심사 ·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시상식 진행	· 추진단 운영 : 20회 · 주관기관 확대 : 10개 기관. 협력 2곳 · 사전프로그램 : 3회 · 발굴된 의제(이해관계자 컨퍼런스) : 11 · 참여한 이해관계자 : 9 · 라운드 테이블 : 1회 · 숙의공론장 시범 운영 · 성과공유회 : 2회 ·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20개 발굴 소모임 4, 단체 10, 기업 4, 지자체 2 · 수상 사례 확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신설 · 공모전 우수사례집발간(국문,영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위탁) 협력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지원, 정책 공조, 기본법 이후 대응,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 지속가능발전을 시,군,구정의 주요가치로 규정하고 실천하는 지방정부(35개소)들간의 정책 공조 및 기본법 이후 대응을 위한 정치권,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소속 지방정부 공무원, 시민들의 교육 및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 추진모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정기 사무 상,하반기 정기회의(2회), 실무협의회의 개최(3회), 담당자 역량강화(1회)	· 기본법 제정 이후 정책, 사업 발굴 등 전방위적 대응 - 협의회는 기본법 제정 이후 정책 대응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단체의 구심점 역할(재정,인력 지원) - 시행령(안)에 회원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성과 도출이 가능한 다양한 대안 제시 활동 전개(국회 정책포럼, 지역 토론회 등) - 지속가능발전 정책 성공 위한 2023년 정책 발굴(지방 정부 예산 지원 등 566억 규모) 주도
정책 포럼(5회) 정치권,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기본법, 시행령 제정 이후 정책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1회(온라인 1.19), 2회(국회, 3.25), 3회(국회 12.20) 열린SDGS포럼 협력(여의도 6.8), SDGs시민넷협력(국회, 2.7)	· 전국 지속협 등과 안정적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비전 공유가 용이한 전국 지속협과 안정적 협력체계 구축 - 상호 협력과 재정, 인력분담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성과 도출
기본법 관련 권역별 숙의공론의 장 개최(5회) 기본법 이후 시행령 제정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지속협 지역조직과 협력하여 순회 개최 경북(4.19), 경남(4.25), 충청(5.3), 전라(5.3), 경기(5.11)	· 회장도시와 협력 회원 정부 실무활동 지원 - 회원정부 실무 추진에 전문적 기술 자문과 실무지원 실시, 회원 정부 만족도 제고 - 예산 투입대비 다양한 성과 거양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동주관(8.11~13) 지속가능발전대상 지방정부협의회장 신설(2개소) 지노반비긴 사무총장 초청 지방정부정책세미나 지방정부 민관협력 대화마당 개최	**[개선사항]** · 대선, 지선 등 정치적 여건 변화 - 정책 대응 활동의 적극적 수용, 의견 청취 등 한계 · 지방선거로 인한 회원 정부 대표(단체장)의 활동 제한 - 전국 지속협 사무국 운영지역과 협력하여 협의회 회원 확대 등 필요(23 중점 추진) · 사무국장 1인 추진체계 한계 - 실무 인력 추가 운영 필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참여(10.10~14) 총회 지방정부세션에 협의회장 지자체 대표 참여	
제15차 생물다양성세계총회 참여(12.12) 지방정부 정상회의 세션에 협의회장 한국대표로 참여	
기본법, 시행령 대응 활동 시행령 관련 지방정부 의견 전달(3.17, 6개의견 반영) 기본법 이후 정책제안서 작성(6.7 국조실 전달)	
회원 정부 활동 지원(총 15회) 청원 교육, 지속협 활동 지원 및 정책 컨설팅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초4~6학년) 제작 용역 추진 교육교재 제작, 사례집 발간, 교육정책포럼 (광주, 12.16)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제도화

·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한 다양한 국내외 실천사례와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관련자들의 교육·훈련·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역 역량을 발전 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천함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1) 지역협의회 용역 사업 진행 · 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교육교재 제작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경기도 광역 및 기초 시·군 민선8기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및 SGDs 연계성 분석 용역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대구시 SDGs 지표조사 연구용역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 정읍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 연구용	· 지역협의회와의 지속가능발전 연구 관련 용역 사업 진행 (총6개 용역사업 완료) · 용역 성과품 - 지속가능발전교육교재 및 사례집 제작, 결과보고서 - 경기도 민선8기 후보자 공약 및 SDGs연계성 분석보고서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 보고서 - 창원시 이해관계자 워크숍 워크북, 온라인강의영상제작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숙의공론장의 필요)
2)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 이해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서 · 2022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후 12월30일 기획재정부 공시완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업무 협약을 진행하여 전국대회 참가비 일부를 대회 개최 지역에 시민햇빛발전소에 출자함. (전주)

국내외 교류협력

2전국단위 공동주최, 지속가능발전관련 네트워크 협력(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지역협의회와의 공동주최, 지역대회, 지속가능발전 주요이해관계자 거버넌스

·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한 다양한 국내외 실천사례와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관련자들의 교육·훈련·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역 역량을 발전 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함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제7회 대구국제폭염대응 포럼 - 주제 : 탄소중립과 회복력 있는 도시 - 일시 : 7.6 - 장소 : 대구엑스코	-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및 지역 방안 논의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현안 발굴 - 총 참여인원 480 - 환경부스 1 - 지속가능발전 전시 1 - 박람회 1
제3회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포럼 - 주제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지역현황 및 발전방향 - 일시 : 12.16 - 장소 : 광주교육대학교	-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및 지역 방안 논의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현안 발굴 - 총 참여인원 480 - 환경부스 1 - 지속가능발전 전시 1 - 박람회 1
제8회 지속가능발전인천대회 - 주제 : 지속가능 미래도시, '전환의 인천'을 바라보다 말하다 - 일시 : 10.28 - 장소 : 인천상공회의소	-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및 지역 방안 논의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현안 발굴 - 총 참여인원 480 - 환경부스 1 - 지속가능발전 전시 1 - 박람회 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박람회 - 슬로건 : 미래를 여는 경기, 지속가능한 광주 - 일시 : 9.28 - 장소 : 경기광주 청석공원	-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및 지역 방안 논의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현안 발굴 - 총 참여인원 480 - 환경부스 1 - 지속가능발전 전시 1 - 박람회 1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포럼개최 : 3차 - 1차 포럼 : 3.25/국회의사당/60여명 - 2차 포럼 : 11.15~11.16/신안비치호텔/70명 - 3차 포럼 : 12.20/국회의사당/80여명	-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및 지역 방안 논의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 현안 발굴 - 총 참여인원 480 - 환경부스 1 - 지속가능발전 전시 1 - 박람회 1

현안실천

RE100시민클럽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1. 사업목적

· 가정생활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에너지전환으로 상쇄시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RE100시민클럽 조직과 운영

2. 2022 주요 활동 및 성과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RE100시민클럽 홈페이지 운영 - RE100시민클럽 안내 및 회원가입증서 발급 ·화이트 : RE100전환의지를 가진 시민 ·옐로우 : 전기에너지 일부를 전환(2kw 미만) ·그린 : 가정 열, 전기 에너지를 전환(2kw이상) ·블루 : 개인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달성(5kw)	
지역실무자 회의 - 일시: 연4회 - 대상: RE100시민클럽 추진위원회 - 내용: RE100시민클럽 참여 확대방안 논의 등	- 회의운영 : 5회 - 홈페이지 운영 : 상시 - 18개 지역 참여, 회원 4,600명 - RE100배지 제작: 6,500개 - 캠페인 진행 지역: 10곳 - 발대식: 3곳 - 실천선언식: 1곳 - 뉴스인터뷰: 1회
지역실무자 회의 - 일시: 7.18/오송 - 대상: RE100시민클럽 지역사무국 실무자 30여명 - 내용: 운영매뉴얼, 홈페이지 개편내용 공유	
RE100시민클럽 발족 - 발족지역: 3곳 - 내용: RE100시민클럽 가입 및 탄소중립 교육	
RE100시민클럽 캠페인 지역사무국 홍보 캠페인 상시진행	

탄소중립(K-솔라리그,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 기후위기 대응은 지구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일부의 노력이 아닌 전 부처와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목표임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태양광 발전 보급에 앞장선 모범사례를 발굴 · 시상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솔라리그 추진위원회 - 대상 :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 회의 개최 : 4회 - 내용 : 제4회 솔라리그 추진 계획 및 시상 논의	- 솔라리그 우수 사례 발굴 - 지자체 5곳, 민간 6곳, 공공기관 1곳, 개인 1명 - 탄소중립 현안 학습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대응 -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확대
솔라리그 심사위원회 - 회의 개최 : 2회 - 내용 : 태양광 정량 및 정성 지표 평가, 발표 심사	- 솔라리그 우수 사례 발굴 - 지자체 5곳, 민간 6곳, 공공기관 1곳, 개인 1명 - 탄소중립 현안 학습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대응 -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확대
솔라리그 시상식 및 사례 공유회 - 대상 : 솔라리그 수상지역 - 일시 : 2022. 11. 2 - 주요 내용 :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솔라리그 우수 사례 발굴 - 지자체 5곳, 민간 6곳, 공공기관 1곳, 개인 1명 - 탄소중립 현안 학습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대응 -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참여 - 회의 개최 : 10회 - 주요 내용 : 탄소중립 현안 및 지역 활동 공유	- 솔라리그 우수 사례 발굴 - 지자체 5곳, 민간 6곳, 공공기관 1곳, 개인 1명 - 탄소중립 현안 학습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대응 -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 참여 - 프로그램 개최 : 2회 - 주요 내용 : 지역 사례 탐방 및 활동 공유	- 솔라리그 우수 사례 발굴 - 지자체 5곳, 민간 6곳, 공공기관 1곳, 개인 1명 - 탄소중립 현안 학습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대응 -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확대

K-SDGs 민관협력 대표사업 발굴

지역 지속가능발전 사업 현황 조사 및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우수사례 목록화, K-SDGs 17개 목표별 민관협력 대표사업 선정 및 모델화

· 목표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17개 사업을 선정하고 목록(모델)화하여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대중인식을 향상하고자 함.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사업 현황조사 - 참여지역 : 81개 (광역16개, 기초65개) - 내용 :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추진사업 현황조사 - 추진사업 수 : 700여개	·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사업 현황조사 : 1회 ·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우수사례 : 51개 ·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대표사업 선정 - 목표1. 공유냉장고 확산으로 취약계층 보호 - 목표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 목표3.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육성 - 목표4. 지방정부 관점에서 구축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시스템 구축 - 목표5. 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 - 목표6.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과 갈등관리 거버넌스 - 목표7. RE100시민클럽 - 목표8. 착한 여행 하루 - 목표9. 대구CSR클럽 - 목표10. 배리어프리를 통한 무장애도시 만들기 - 목표1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프로젝트 - 목표12. 제로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 목표13. 친환경 출퇴근을 위한 에코바이크 챌린지 - 목표14. 김포 한강하구 민간인 통제구역 습지 모니터링 - 목표15.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한 장록국가습지 지정 - 목표16. 주민자치회 마을계획과 SDGs 연동 모델개발 - 목표17. 도민의 직접참여가 만드는 마법, 경남SDGs 대장정
우수사례 목록화 - 내용: K-SDGs와 연계성이 높고 민관협력 사업으로 모델화 가능한 우수사례를 목표별 평균 2~3개 선정 - 사례수: 51개 사례	
우수사례 발굴 논의 및 자문단 컨설팅 - 회의 개최 : 5회 - 내용 :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기준 마련과 지역 이해 증진 및 자문단의 우수사업 논의	· 우수사례집, 대표사업 사례집, 사업설명영상 제작

L-SDGs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숙의공론화장 마련과 컨설팅 진행

·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역단위 SDGs 실천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실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그룹(MGoS)을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과제도출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타운홀 미팅(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 대상 : 창원시 행정, 시민, 주요 이해관계자 - 회의 개최 : 1회, 80명 - 내용 : 창원시 이해관계자그룹 형성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과제도출	· 타운홀미팅 : 1회 - 총 참여인원: 80여명
지방 SDGs 수립·이행·평가 현황 조사 -대상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 - 내용 : 인식전환, 조직구성, 제도적기반, SDGs작성, SDGs이행, SDGs평가 - 참여지역 : 72개 지역 (광역16개, 기초56개)	· 지방 SDGs 수립·이행·평가 현황 조사 - 응답지역: 72개 지역 (광역16개, 기초 56개)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원 워크숍 진행 - 대상 : 워크숍 신청 10개 지역 행정, 협의회 위원, 시민 등 - 내용 : 지역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과제도출과 컨설팅 - 참여지역: 아산(21.11.30) 15명, 나주(21.12.28) 19명, 부여(1.20) 15명, 순천(1.24) 48명, 안성(1.27) 34명, 세종시(1.28) 13명, 통영(2.8) 25명, 성남(2.9) 14명, 군포(2.14) 37명, 경기 화성(2.18) 13명	· 2022 이해관계자 워크숍 : 10회 - 총 참여인원: 230여명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매뉴얼 개정판 - 내용: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거나 수행중인 지방정부의 활동을 예시로 서술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려는 지방정부에 추진방법을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매뉴얼 개정판 발간

지속가능발전 연계 연구사업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ESG, 지속가능한 조직

· 지역내 SDGs 수립과 실천의 연결을 지원하는 전국협의회 활동 추진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으로 지역 및 전국협의회의 정책역량을 보완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1)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프로그램조사 2022. 6월 ~ 8월	1)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및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제안
2) 충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 2월 ~ 11월	2)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의 정책의 주요 가치로 자리매김하며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향상 및 지표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3) 운봉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2. 8월 ~ 12월	3) 조직의 미션 및 비전 확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조직 활성화 및 주요 이슈 및 이해관계자 발굴
4) 당진시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2022. 9월 ~ 12월	
5) 대구지속협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2022. 12월 ~ 12월	

교육 및 홍보

차세대 탄소중립 생태교통 리더 활동가 양성과정

전국의 생태교통 리더 양성과 네트워크 조직

· 탄소중립 분야 중 수송분야에 특화한 생태교통 리더 활동가를 양성하고, 전국적인 생태교통 네트워크 형성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차세대 탄소중립 생태교통 리더 활동가 양성과정 - 내용 : 생태교통 분야에 특화된 활동가를 양성하고 전국의 생태교통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 - 참여대상 : 지속가능발전분야 또는 환경분야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31명	
생태교통 활동 매뉴얼 - 지역의 생태교통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	- 기획회의 : 5회 - 수료 인원 : 20명 - 참여 강사 :14명 - 온라인강의 동영상 : 6개 - 워크북 : 2개 - 생태교통 활동 매뉴얼 : 1개 - 사업계획서 제출 : 17건
교육과정 - 온라인교육, 집체, 현장, 성과공유회로 총38시간 - 자전거 선진지 창원시 누비자센터 견학 - 생태교통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피드백	
생태교통 네트워크 조직 - 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네트워크 유지	

역량강화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협의회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월간지속협 - 내용 : 사람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SDGs사람책 - 참석대상 : 지역협의회 활동가, 위원 - 1차(8.31) : 엄영철 - 2차(9.29) : 김가영 - 3차(10.27) : 김민재, 김주리, 김준희 - 4차(11.30) : 김미리 - 5차(12.28) : 모두가 주인공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11.15~11.16 - 장소: 신안비치호텔 - 참여인원: 20여명 - 내용: 정책포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현장실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설명 영상 : 3편 - 영상 조회수 : 800회 -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1회, 영상 5개 - 영상 조회수 : 220회
전국활동가 온라인 세미나 - 일시: 11.3 -장소: 온라인 줌 - 참여인원: 80여명 - 내용: 특강 '지속가능한 도시와 시민활동가', 협의회 현안 공유	- 월간지속협 운영 : 5회 - 월간지속협 인터뷰이 : 4명 - 참여인원 : 80여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설명 영상 배포 - 일시: 1.12 김병완 교수/ 3.15 양준화 사무총장 - 내용: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 방향과 실무자 대응방안	

홍보·미디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 및 지역이슈 공유

· 지속가능발전 정보·소통의 플랫폼 역할 강화
· 지속가능발전 인식 및 활동 확산

2022년 주요활동	2022년 활동성과
1) 뉴스레터 발송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정기적 발송 · 전국협의회 소식과 지역 협의회의 소식 및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관한 소식공유	
2) 온라인 홍보 ·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홈페이지 개편 · 매주 전국협의회 활동 소식 및 일정 업데이트 · 전국대회 홈페이지 운영 - 전국대회에 정보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 맞춰 대회 전용 홈페이지 구축, 대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	· 뉴스레터 : 매월1회, 총12회 발행 구독자수 : 2,000여명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한 홍보 확대 (전국협의회 활동소식 및 지역이슈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3) 공동홍보사업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통일 지속추진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배지 제작 및 배포	· SDGs 홍보물품 제작, 판매로 지속가능발전 홍보 효과 증가
4) 협의회 활동가 SNS 소통 공간 운영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각 그룹별 카카오톡방 운영(운영위원회 등) · 전국협 실무자 오픈 채팅방 운영 (현재 총 86명 참여)	

재정 및 조직 관련

2022년 총 수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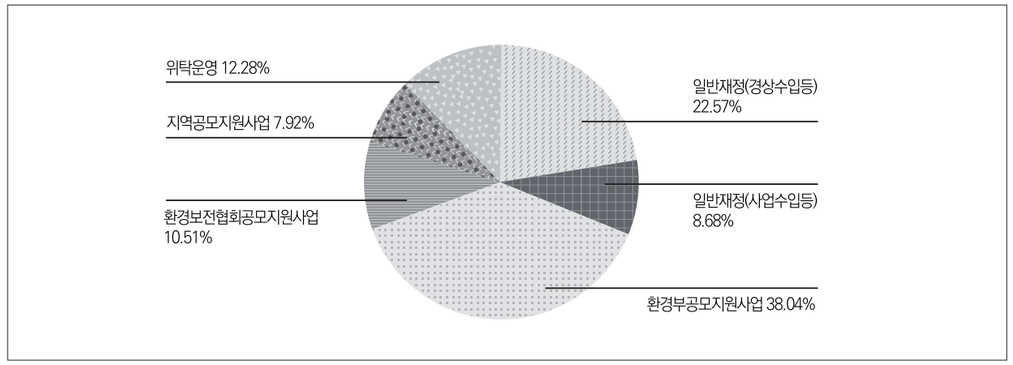

수입

구분	금액(₩)	비율(%)
회비수익	76,651,000	10.46
전기이월금	88,758,689	12.11
사업수입 등	63,638,762	8.68
지역공모지원수익	413,871,718	56.47
위탁운영수익	90,043,670	12.28
합계	732,963,839	100.00

상세내역

구분	사업명	금액(₩)	비율(%)
일반재정(경상수입)	지역협의회 회비	76,651,000	10.46
	2021년도 이월금	88,758,689	12.11
일반재정(사업수입등)	SDGs홍보물품제작 및 참가비 외 공모지원사업 등	63,638,762	8.68
환경부공모지원사업	2022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조사 및 홍보·교육	200,000,000	27.29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모델발굴	30,789,596	4.20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32,547,802	4.44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프로그램조사	15,454,540	2.11
환경보존협회공모지원사업	2021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지역사회 탄소중립분야3)	12,000,000	1.64
	2022년 지역사회 탄소중립 환경교육리더 양성교육 운영③	65,000,000	8.87
지역공모지원사업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319,780	0.04
	충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9,000,000	2.59
	운봉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17,000,000	2.32
	당진시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8,260,000	1.13
	대구지속협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13,500,000	1.84
위탁운영사업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수탁운영	90,043,670	12.28
합계		732,963,839	100.00

2022년 총 지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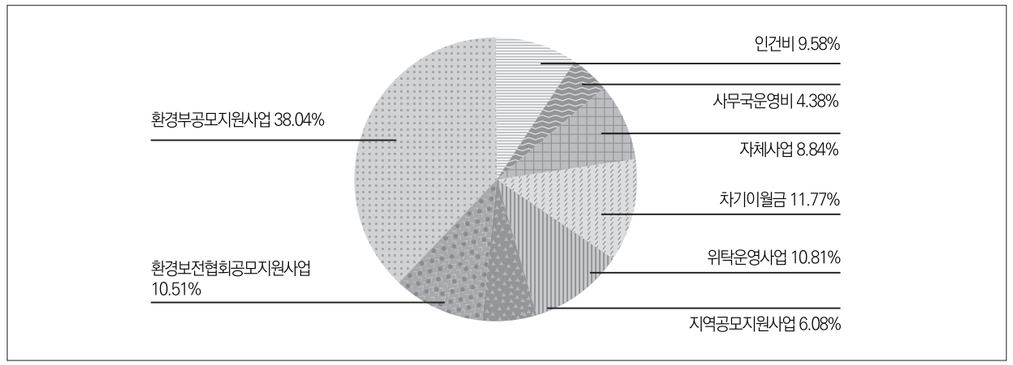

지출

구분	금액(₩)	비율(%)
인건비용	70,213,288	9.58
사무국운영비용	32,067,821	4.38
자체사업비용	64,772,572	8.84
공모지원사업비용	400,371,718	54.63
위탁운영비용	79,252,088	10.81
차기이월금	86,286,352	11.77
합계	732,963,839	100

상세내역

구분	사업명	금액(₩)	비율(%)
인건비	급여 및 퇴직금	70,213,288	9.58
사무국운영비	사무국운영비(일반수용비, 관리운영비, 보험료 외)	32,067,821	4.38
자체사업	지속가능발전활성화	9,853,566	1.34
	협력사업	31,041,006	4.24
	교육 및 홍보	23,878,000	3.26
환경부공모지원사업	2022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조사 및 홍보·교육	200,000,000	27.29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모델발굴	30,789,596	4.20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지원	32,547,802	4.44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프로그램조사	15,454,540	2.11
환경보전협회공모지원사업	2021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지역사회 탄소중립분야3)	12,000,000	1.64
	2022년 지역사회 탄소중립 환경교육리더 양성교육 운영③	65,000,000	8.87
지역공모지원사업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319,780	0.04
	충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9,000,000	2.59
	운봉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17,000,000	2.32
	당진시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8,260,000	1.12
	대구지속협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0	0.00
위탁운영사업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수탁운영	79,252,088	10.81
차기이월금	차기이월금	86,286,352	11.77
합계		732,963,839	100.00

■ 2022년 총괄표

(단위 : 원)

항 목	일반재정	지원재정	총 계
수입 합계	229,048,451	503,915,388	732,963,839
지출 합계	229,048,451	503,915,388	732,963,839
잔 액	0	0	0

■ 자산/부채 현황

(단위 : 원)

자산	금액	부채	금액
사무총국 임대보증금	10,000,000	차입금	0

■ 2022년 수입결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비고
총 계	660,000,000	732,963,839	
일 반	174,589,262	229,048,451	
경상수입	163,758,689	165,409,689	
회비	75,000,000	76,651,000	
이월	88,758,689	88,758,689	
후원	10,830,573	63,638,762	
일반후원	1,000,000	0	
사업수입 등 기타	9,830,573	63,638,762	
지 원	485,410,738	503,915,388	
공모지원	395,410,738	413,871,718	환경부외 사업비(계약금)
2022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조사 및 홍보·교육	200,000,000	200,000,000	
연구용역(K-SDGs)	30,862,936	30,789,596	
연구용역(L-SDGs-2021)	32,547,802	32,547,802	
연구용역 (차세대환경교육-2021)	12,000,000	12,000,000	
연구용역 (차세대생태교통교육-2022)	60,000,000	65,000,000	
연구용역(의왕SDGs)		319,780	
연구용역(충주SDGs)		19,000,000	
연구용역(민간생물다양성조사)		15,454,540	
연구용역(운봉읍탄소중립)		17,000,000	
연구용역(당진ESG활성화)		8,260,000	
연구용역(대구지속가능성보고서)		13,500,000	
위탁운영	90,000,000	90,043,670	지방정부협의회
지지협사무국 운영	90,000,000	90,043,670	

■ 2022년 지출결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관	예산과목 항	예산과목 목	예산액	지출액	비고
총 계			660,000,000	732,963,839	
관리운영비			98,048,202	102,281,109	
	인 건 비		57,348,202	70,213,288	
		급 여	40,308,002	53,134,258	
		퇴 직 금	17,040,200	17,079,030	
	사무국운영비		40,700,000	32,067,821	
		업무추진비	4,200,000	4,126,900	운영위원장 활동비, 회비, 단체후원금 등
		제세공과금및수수료	7,000,000	4,712,327	통신·우편·송금수수료·각종법인세 등
		일반수용비	3,500,000	827,124	사무용품 및 복사기유지비 등
		관리운영비	5,000,000	7,591,070	임대·관리비, 운영비 등
		사회보험료	21,000,000	14,810,400	사측부담
사 업 비			530,410,738	544,396,378	
	자체사업		45,000,000	64,772,572	
		지속가능발전활성화	21,000,000	9,853,566	위원회 운영, 의제별 네트워크, 현황·정보
		협력사업	9,000,000	31,041,006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공모전,현안실천, 국내·외교류협력
		교육 및 홍보	15,000,000	23,878,000	역량강화, 홍보·미디어
	공모지원		395,410,738	400,371,718	
		2022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조사 및 홍보·교육	200,000,000	200,000,000	사업성경비 70,823,700 임차료, 유인물비, 전시 홍보, 회의 및 대회진행비 등
		연구용역(K-SDGs)	30,862,936	30,789,596	사업성경비 19,801,906 현황조사비,회의비,유인물비 등
		연구용역(L-SDGs-2021)	32,547,802	32,547,802	사업성경비 11,372,492 현황조사비,워크숍운영,컨설팅단운영비 등
		연구용역 (차세대환경교육-2021)	12,000,000	12,000,000	교육프로그램운영,지역실천사업운영비등
		연구용역(차세대생태교통교육-2022)	60,000,000	65,000,000	사업성경비 16,486,431 자문회의비, 유인물비, 워크숍, 보고서제작 등
		연구용역(의왕SDGs)		319,780	추가유인물비
		연구용역(충주SDGs)		19,000,000	사업성경비 3,055,960 회의비, 유인물비 등
		연구용역(민간생물다양성조사)		15,454,540	사업성경비 6,896,270 여비, 유인물비 등
		연구용역(운봉읍탄소중립)		17,000,000	사업성경비 2,592,112 회의비,유인물비 등
		연구용역(당진ESG활성화)		8,260,000	사업성경비 706,010 회의비,유인물비 등
		연구용역(대구지속가능성보고서)		0	보고서제작비 등
	위탁운영		90,000,000	79,252,088	지방정부협의회
		지지협사무국운영	90,000,000	79,252,088	사무운영비 45,000,000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위탁
예 비 비			31,541,060	0	
차기이월				86,286,352	일반재정 : 61,994,770 공모지원 : 13,500,000 위탁운영 : 10,791,582

■ 2022년 수입 · 지출 결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관	예산과목 항	예산과목 목	수입액
총 계			732,963,839
일 반			229,048,451
	경상수입		165,409,689
		회비	76,651,000
		전년도이월	88,758,689
	후원		63,638,762
		일반후원	0
		사업수입 등	63,638,762
지 원			503,915,388
	공모지원		413,871,718
		전국대회+공모전	200,000,000
		연구용역(K-SDGs)	30,789,596
		연구용역(L-SDGs)	32,547,802
		연구용역(민간생물다양성조사)	15,454,540
		연구용역(차세대환경교육-2021)	12,000,000
		연구용역(차세대생태교통교육-2022)	65,000,000
		연구용역(의왕SDGs)	319,780
		연구용역(충주SDGs)	19,000,000
		연구용역(운봉읍탄소중립)	17,000,000
		연구용역(당진ESG활성화)	8,260,000
		연구용역(대구지속가능보고서)	13,500,000
	위탁운영		90,043,670
		지지협사무	90,043,670

예산과목 관	예산과목 항	예산과목 목	지출액
총 계			732,963,839
관리운영비			102,281,109
	인 건 비		70,213,288
		급 여	53,134,258
		퇴 직 금	17,079,030
	사무총국운영비		32,067,821
		업무추진비	4,126,900
		제세공과금 · 수수료	4,712,327
		일반수용비	827,124
		관리운영비	7,591,070
		사회보험료	14,810,400
사 업 비			544,396,378
	자체사업		64,772,572
		지속가능발전활성화	9,853,566
		협력사업	31,041,006
		교육 및 홍보	23,878,000
	공모지원		400,371,718
		전국대회+공모전	200,000,000
		연구용역(K-SDGs)	30,789,596
		연구용역(L-SDGs)	32,547,802
		연구용역(민간생물다양성조사)	15,454,540
		연구용역(차세대환경교육-2021)	12,000,000
		연구용역(차세대환경교육-2022)	65,000,000
		연구용역(의왕SDGs)	319,780
		연구용역(충주SDGs)	19,000,000
		연구용역(운봉읍탄소중립)	17,000,000
		연구용역(당진ESG지표)	8,260,000
		연구용역(대구지속가능보고서)	0
	위탁운영		79,252,088
		지지협사무	79,252,088
차기이월			86,286,352

■ 2022년도 회비납부 현황

회비 : 지역별 협의회 지원예산의 1% (단위 :원)

지 역	광역	기초	2020년	2021년	2022년	납부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7,000,000	7,000,000	7,000,000	1
부산광역시	부산		1,500,000	1,500,000	1,500,000	1
		부산진구	300,000	300,000		
		해운대				
대구광역시	대구		3,325,000	1,187,500	2,327,500	2
		동구	90,000	90,000		
		달서구	300,000	300,000	300,000	
		북구	300,000			
		수성구				
인천광역시	인천		2,000,000	2,000,000	2,000,000	5
		학산	300,000	300,000	300,000	
	(22년재발족)	남동			300,000	
		부평	700,000	700,000	700,000	
		서구	300,000	300,000	300,000	
		계양				
		연수				
광주광역시	광주		3,000,000	3,000,000	3,000,000	1
대전광역시	대전		2,000,000	2,000,000	2,000,000	1
울산광역시	울산		1,500,000	1,500,000	1,500,000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1,000,000	1,000,000	1,000,000	1
강 원 도	강원		1,700,000	1,500,000	1,500,000	9
		강릉	500,000	500,000	500,000	
		속초	200,000	200,000	200,000	
		원주	1,000,000	700,000	700,000	
		정선	400,000	400,000	400,000	
		춘천	300,000	500,000	500,000	
	(22년발족)	홍천			394,000	
		태백	240,000	240,000	240,000	
		평창	500,000	500,000	500,000	
		동해				
		삼척				
		영월				

지 역	광역	기초	2020년	2021년	2022년	납부지역
경 기 도	경기		7,200,000	5,000,000	7,000,000	24
		가평	300,000			
		고양	800,000	800,000	800,000	
		과천	300,000	300,000	300,000	
		광명	1,000,000	1,000,000	1,000,000	
		광주	400,000	400,000	400,000	
		구리	300,000	400,000	400,000	
		군포	700,000	700,000	700,000	
		김포	700,000	700,000	700,000	
		성남	1,000,000	1,000,000	1,000,000	
		수원	1,500,000	1,500,000	1,500,000	
		안산	1,000,000	1,000,000	1,000,000	
		안성	500,000	500,000	500,000	
		안양	500,000	500,000	500,000	
		양평	400,000	400,000	400,000	
		여주	400,000	400,000	400,000	
		연천	200,000	200,000	200,000	
		오산	300,000	300,000	300,000	
		용인	800,000	800,000	800,000	
		의왕	400,000	399,500	399,500	
		의정부	700,000	700,000	700,000	
		이천	500,000	1,000,000	500,000	
		파주	500,000	700,000	700,000	
		평택	500,000	500,000	700,000	
		화성	1,000,000	1,000,000	1,000,000	
		남양주				
	(22년재발족)	부천				
	(22년재발족)	시흥				
		포천				
		하남				
충청북도	충북		1,500,000	1,500,000	1,500,000	4
		제천	400,000	400,000	400,000	
		청주	1,500,000	1,500,000	1,500,000	
		충주	300,000	500,000	500,000	
		단양				
		보은				
		옥천				
		증평				
		영동				
		괴산				
		음성				
		진천				

지 역	광역	기초	2020년	2021년	2022년	납부지역
충청남도	충남		2,000,000	2,000,000	2,000,000	14
		공주	100,000	100,000	100,000	
		논산	300,000	300,000	300,000	
		당진	700,000	700,000	750,000	
		보령	400,000	400,000	400,000	
		서산	100,000	200,000	150,000	
		서천	200,000	200,000	200,000	
		아산	400,000	1,400,000	400,000	
		예산			200,000	
		천안	100,000	100,000	100,000	
	(21년발족)	부여			400,000	
		청양			100,000	
		태안			100,000	
		홍성			100,000	
전라북도	전북		3,000,000	3,000,000	3,000,000	3
		임실	539,500	539,500		
		전주	2,000,000	2,800,000	2,800,000	
		정읍	400,000	400,000	1,000,000	
		김제				
		군산				
		익산				
		장수				
		완주				
전라남도	전남		1,300,000	1,300,000	1,300,000	6
		담양	100,000		120,000	
		목포	200,000		300,000	
		무안		200,000	200,000	
		순천	1,000,000	1,000,000	1,000,000	
		신안	200,000	200,000	200,000	
		나주		100,000		
		진도				
		해남				
		구례				
		고흥				
		곡성				
		강진				
		보성				
		장흥				
		여수				
		영암				
		장성				
		함평				
		화순				

지 역	광역	기초	2020년	2021년	2022년	납부지역
경상북도	경북		1,200,000	1,000,000	1,000,000	4
		경주	250,000	250,000	250,000	
		안동	100,000	100,000	100,000	
		포항	300,000	300,000	300,000	
		영천				
		칠곡				
		영덕				
	(21년발족)	성주				
		울릉				
		상주				
		영양				
		김천				
		영주				
		예천				
		문경				
		의성				
경상남도	경남		2,800,000	2,800,000	1,300,000	6
		거제	700,000	700,000	500,000	
		김해	800,000	720,000	720,000	
		밀양	400,000	400,000		
		진주	500,000	500,000	700,000	
		창원	1,000,000	1,000,000	1,000,000	
		통영	1,097,000	500,000	500,000	
		사천				
		창녕				
		산청				
		양산				
		고성				
제 주 도	제주도		1,800,000	1,400,000	1,600,000	3
		제주시	300,000	300,000	300,000	
		서귀포	200,000	200,000	200,000	
총 계	148		78,541,500	74,926,500	76,651,000	86

■ 2022년도 연회비 기준

○ 전국협의회 정관 제30조 (재원의 조달) 제②항에서 회비 및 분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협의회 제33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협의회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회비납부 기준액을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지원예산액의 1%로 결의하였음.

추진기구 지원예산이 있는 지역

구 분	연회비	최저회비
기초자치단체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예산액의 1%	없음
광역자치단체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만원 이상

■ 2023년도 연회비 기준

○ 전국협의회 정관 제30조 (재원의 조달) 제②항에서 회비 및 분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협의회 제33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협의회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회비납부 기준액을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지원예산액의 1%로 결의하였음.

○ 전국협의회 제 120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협의회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부액 최저 기준을 변경 하기로 결의하였음.

구 분	연회비	최저회비
기초자치단체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예산액의 1%	30만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만원 이상

지속가능한 조직 구성, 인권·노동·소통

직원의 참여와 보호

○ 사무총국 내에서는 활동 기획 워크숍, 내부 업무 세미나, 전체회의 등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참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구조	주기	대상	주요 논의사항
활동 기획 워크숍	연 1회	직원 전체	- 협의회 주요 활동에 대한 방향 논의
전체회의	주 1 회	직원 전체	- 주요 업무 공유 - 운영과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

임직원 고용현황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2021년 5명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위탁으로 1명이 충원되어 현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현황	2022년 고용현황
정규직(남/여)	5명(남 3명/여 2명)	6명(남 4명/여2명)
비정규직	1명	1명
이직자	3명	0명(현재)
근속연수 (전체평균)	1.4	2

노동권 보호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사시 경력산정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호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금

○ 보수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매월 급여명세서 발행을 통해 임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무 관련하여 유연근무제와 자율근무제를 실시하여 유연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권장하였습니다.

휴가 및 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여름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15일 이상의 휴가와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직원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에 가입,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 사무총국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매주 내부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슈와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필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1회/1시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회/1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	1회/1시간	퇴직연금 교육	1회/1시간

<역량 강화 교육>

내부 역량 세미나	주 1회/총 42회	- 협의회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 -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한 역량강화

지속가능성의 확산, 정보·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등 규모가 큰 행사에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작된 영상 콘텐츠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지원 서비스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와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 방침에 따라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필수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종 이력서 및 공모 사업 서류접수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취득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개인정보 취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 모든 전등기구를 LED로 설치해 전력 소비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전원 차단 기능이 탑재된 멀티탭 사용, 배출되는 이면지의 재사용과 개인 머그컵 사용, 적정온도 준수를 통해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진행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현수막 사용, 온라인 자료집 배포, 개인 텀블러 지참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행사 후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복지 증진

○ 지역의 여건상 활동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신규 활동가들의 이탈이 높은 편입니다.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3년 이하 신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가 사회협동조합 '동행' 가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록

· 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및 네트워크 현황
· 혁신과비전 특별위원회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 NPO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 보고지표
· 202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간자료 목록 목록
·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활동 결과

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연번	광역	기초	이 름	직책	비고
1	전남		김영진	상임회장	당연직
2	서울		이경희	공동위원장	당연직
3	부산		구영기	공동회장	당연직
4	대구		정현수	회장	당연직
5	인천		심형진	상임회장	당연직
6	대전		김조년	상임회장	당연직
7	울산		이병규	회장	당연직
8	세종		이상진	상임회장	당연직
9	경기		원호식	상임회장	당연직
10	강원		최윤	회장	당연직
11	충북		홍상표	회장	당연직
12	충남		허재영	대표회장	당연직
13	전북		유혜숙	상임대표	당연직
14	경북		권순태	회장	당연직
15	제주		고태언	상임의장	당연직
16	전국		양준화	사무총장	당연직
17	전국		조현수	녹색전환정책과장	당연직
18	강원		정명섭	사무처장	
19	강원		권금순	사무부장	
20	경기		박정민	사무처장	
21	경기		임병호	부장	
22	경남		박찬	사무처장	
23	경남		소현민	팀장	
24	경북		김주한	사무처장	
25	경북		권보성	기획국장	
26	광주		김광훈	시민참여에너지 전환위원회위원장	
27	광주		신석기	부장	
28	대구		권정수	부장	
29	대구		윤한진	팀장	
30	대전		안재준	공동운영위원장	
31	대전		추명구	사무처장	
32	부산		송낙원	사무처장	
33	부산		김지현	차장	
34	서울		민성환	사무담당위원	

35	서울		한승욱	간사	
36	세종		최병조	사무처장	
37	세종		김정아	팀장	
38	울산		김태훈	사무처장	
39	울산		허혜진	팀장	
40	인천		전계숙	팀장	
41	인천		최인경	간사	
42	전남		김순희	위원	
43	전남		박선자	간사	
44	전북		이성중	부장	
45	전북		홍성률	부장	
46	제주		정연옥	사무처장	
47	충남		정은주	사무처장	
48	충남		이원필	사무국장	
49	충북		김대광	사무처장	
50	충북		이은주	팀장	
51	강원	강릉	장철현	사무국장	
52	강원	강릉	윤소윤	사무부장	
53	강원	원주	제현수	사무국장	
54	강원	원주	고상백	공동대표	
55	강원	춘천	김상진	사무국장	
56	강원	홍천	윤영호	대표회장	
57	강원	홍천	전장수	사무국장	
58	경기	고양	이인영	사무국장	
59	경기	고양	전아영	팀장	
60	경기	과천	강희석	사무국장	
61	경기	과천	정혜숙	간사	
62	경기	광명	허기용	사무총장	
63	경기	광명	노희준	부장	
64	경기	광주	김미화	사무국장	
65	경기	광주	정현선	간사	
66	경기	구리	임순빈	운영위원장	
67	경기	구리	이한윤	운영위원	
68	경기	군포	여민욱	사무국장	
69	경기	군포	윤여운	사무차장	
70	경기	김포	조건희	사무국장	
71	경기	김포	조영서	팀장	
72	경기	성남	김태진	사무국장	
73	경기	성남	오영애	팀장	
74	경기	수원	김찬수	운영위원장	
75	경기	수원	박종아	사무국장	
76	경기	안산	강소영	사무국장	
77	경기	안산	유창희	사무차장	
78	경기	안성	박영숙	운영위원장	
79	경기	안성	박윤경	사무국장	
80	경기	여주	박민혁	사무국장	

81	경기	여주	윤인옥	사무과장	
82	경기	연천	성기호	회장	
83	경기	연천	이민영	사무국장	
84	경기	오산	오영일	운영위원장	
85	경기	의왕	이경자	상임회장	
86	경기	의왕	박경석	사무국장	
87	경기	의정부	사유철	운영위원	
88	경기	의정부	김두만	사무국장	
89	경기	이천	임성아	사무국장 대행	
90	경기	이천	김대숙	간사	
91	경기	파주	이지호	사무국장	
92	경기	파주	오상구	간사	
93	경기	평택	오민정	사무국장	
94	경기	평택	김희년	사무간사	
95	경남	거제	이행규	회 장	
96	경남	거제	황정원	사무국장	
97	경남	진주	성세훈	사무국장	
98	경남	진주	이선영	팀장	
99	경남	창원	김연옥	사무국장	
100	경남	창원	성지수	간사	
101	경남	통영	여경모	사무국장	
102	경남	통영	한혜린	팀장	
103	경북	경주	윤태열	부회장	
104	경북	경주	김동철	위원	
105	경북	안동	우병식	회장	
106	경북	안동	최병우	사무국장	
107	경북	포항	정정애	사무국장	
108	경북	포항	강민옥	교육팀장	
109	인천	남동	이장수	회장	
110	인천	남동	강명숙	사무국장	
111	인천	미추홀구 (학산)	이명순	사무국장	
112	인천	미추홀구 (학산)	김종임	분과위원장	
113	전남	목포	이해송	상임의장	
114	전남	목포	김경완	사무국장	
115	전남	순천	김창진	팀장	
116	전남	순천	공정민	팀장	
117	전남	신안	김중식	사무국장	
118	전남	신안	최경화	간사	
119	전북	전주	강소영	사무국장	
120	전북	전주	이민경	부장	
121	충남	공주	주진영	사무국장	
122	충남	공주	김규헌	감사	
123	충남	논산	김재광	사무국장	
124	충남	논산	박다혜	실장	

125	충남	당진	이동준	사무국장	
126	충남	당진	김혜선	사무차장	
127	충남	보령	신광수	대표회장	
128	충남	보령	채준병	사무국장	
129	충남	부여	이재택	사무국장	
130	충남	부여	최정은	실장	
131	충남	서산	정경란	사무국장	
132	충남	서산	전량배	운영위원장	
133	충남	서천	홍성민	국장	
134	충남	서천	이윤미	간사	
135	충남	천안	김우수	사무국장	
136	충남	천안	김민아	간사	
137	충남	청양	최영문	사무국장	
138	충남	청양	안기봉	경제산업분과위원	
139	충남	태안	이재옥	사무국장	
140	충남	태안	권문선	위 원	
141	충남	홍성	김금녕	사무국장	
142	충남	홍성	김나연	부회장	
143	충북	제천	최은희	사무국장	
144	충북	제천	정은영	팀장	
145	충북	청주	박종을	사무처장	
146	충북	청주	이수진	정책기획국장	
147	충북	충주	유순례	사무국장	
148	충북	충주	김병덕	과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및 네트워크 현황

정책위원회

연번	이 름	소속	직책	비고
1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위원장
2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대표	
3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4	김택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5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6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7	신윤관	ESG코리아	이사	
8	오병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	
9	유문종	경기도따복공동체	공동위원장	
10	이성훈	경희대미래문명원	특임교수	
11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박사	
12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13	최진하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원장	
14	정은주	충남협의회	사무처장	
15	김대광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16	박정민	경기협의회	사무처장	
17	박종아	수원협의회	사무국장	
18	오용석	대구협의회	사무처장	
19	지영일	인천협의회	사무처장	
20	이동준	당진협의회	사무국장	
21	정명섭	강원협의회	사무처장	
22	박주영	전남협의회	사업국장	
23	정연옥	제주도협의회	사무처장	
24	제현수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25	양준화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교육위원회

연번	이 름	소속	직책	비고
1	제현수	원주협의회	사무국장	위원장
2	김진화	대전협의회	위원	
3	박정순	생태누리연구소	소장	
4	박종을	청주협의회	사무처장	
5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6	최병조	세종협의회	사무처장	
7	손봉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사무국장	
8	김다원	광주협의회	ESD위원장	
9	양준화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기후에너지네트워크

연번	지역	비고
1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2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6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9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4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1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2	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3	오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4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6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7	포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8	인천미추홀구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9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30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1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32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33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34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35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연번	지역	비고
1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2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3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9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4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1	포항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2	밀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3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4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6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27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 네트워크		
연번	지역	비고
1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2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3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9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4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	포항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	당진시청 지속가능협력팀	
21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의제 네트워크		
연번	지역	비고
1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2		사무국
3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4		사무국
5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6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9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4	경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새시대를 여는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지속가능발전은 정책 키워드나 학술 용어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저성장,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략이자 방안으로 각계각층에서 거론되고 있음

· 유엔의 SDGs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실천운동에 대한 관심이 국가와 지역에서 증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더욱 중앙과 지방정부에 새롭게 정립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실천 운동을 해 왔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지난 20년을 조망하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특별위원회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고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책위원장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대표	
김대광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박정민	경기협의회 사무처장	
박종아	수원협의회 사무국장	
오용석	대구협의회 사무처장	
박정진	전국협의회 사무국장	
박 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전국협 정책단장

■ 기본목적

· SDGs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 논의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방향
  - 전국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심 역할의 방안
  - 지방의제21의 환경 중심의 실천운동 중심의 방향에서 전환
· 전국협의회의 역할과 방향 : 전국 단위의 역할, 명칭 변경 등
· 목표별 네트워크 중앙사무국 역할 제고(SDG 5, 10, 7, 11, 13, 15)

SDGs	네트워크명	비고
5, 10	성평등네트워크	
7, 13	기후에너지네트워크	
11	생태교통네트워크	
15	생물다양성네트워크	

■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에 대한 요청사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의 지속성
  -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부각된 문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나타난 문제
· 조직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광역과 기초의 현안에 대해 판단기준 제시
· 조직진단 및 필요 내용에 대한 흐름과 변화 정리
· 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안 제시
  - 기구 및 조직개편, 개편의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진행

■ 혁신특위 주요활동

· 혁신특위 회의 일정
  - 1차회의 : 8월 23일(화) 저녁 7시 ~ 9시, 온라인 회의
    - 혁신특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 협의회의 과거와 현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 2차회의 : 9월 5일(월) 오후 3시 ~ 7시, 서울역 회의실
    - 협의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 협의회의 미래 방향 논의
  - 3차회의 : 9월 30일(금) 오전 10시 ~ 12시, 서울역 회의실
    - 혁신특위 보고서(초안)에 대한 내용 논의
    - 향후 의견수렴 일정 논의

· 의견수렴 진행
  - 11월 3일(목) 오후 4~5시 : 전국 활동가 대회 온라인 대화 마당
  - 11월 16일(수) 오전 10~12시 : 협의회 활동가 이야기 마당
  * 하반기 지역 일정과 행사가 다수 진행되는 관계로 공식적인 의견수렴를 전국 활동가 대회, 네트워크 위원장단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

· 의견수렴 결과
  - 논의는 일부 진행했지만, 협의회 전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의견수렴만 진행되어, 차기 전국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향후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야 할 혁신의 길 :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가?

1.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미와 성과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장 이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확산에 지대한 공헌
- 1992년 지구정상회의(리우환경회의) 이후 1996년까지 국가는 의제21을,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을 만들도록 권고했음
-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역량과 환경운동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1995년부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폭 확산되기 시작함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가치를 실제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각 지역에서 지난 20여 년 넘게 진행되었고, 지역내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성장과 확산에서 구심점 역할 수행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의 확산, 실천의 확산, 정책과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음

·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진화한 시대정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인식확산이 진전되었으며, 국내에서도 17개 분야별 활동으로 전면 확산하는 것이 중요
- SDGs 등장 이후 조직명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고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실천운동을 실행하는 주체로써 시민, 기업, 행정의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동안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이해당사자 그룹 참여, 각 지역의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추진 중에 있음
-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아래에서 위로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었음

2. 협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

■ 전반적인 현실과 한계

· 지난 20여년 간 그대로 유지된 협의회의 한계
- 20여 년 넘게 협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왔고, 현재의 문제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지방 협의회 입장에서는 당면한 지역과 협의회의 문제를 각 지역별로 해결하는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 해 전국적인 연대와 협력이 어렵게 만다는 요인을 제공함

· 협의회의 태생적 한계,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 따라 사업 추진기구의 역할에만 충실해 왔음

· 협의회로 전환시 형식뿐만 아니라 비전, 활동방식 변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
- 조직명을 지방의제21추진기구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한 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인식이 확산
- 다만, 해당 지역의 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의도치 않게 SDGs에 대한 독점이라는 오해와 불편한 시선, 지역의 정서적 지지와 확산의 한계도 나타남
- 즉, SDG 전면화 이후 17개 영역에서 기존단체들과 협의회 활동 영역의 관계 설정이 미진해 기존 단체들의 활동 밥상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협의회가 역할을 가져간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함
- 일부 협의회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변화보다는 조직의 생존 변화로 대응하는 경우도 발생함

■ 전국 협의회의 현실과 한계

· 협의회 운영방식의 변화 성찰
- 초창기 지역사회 여러 조직의 연대체로서 역할, 협의체로서 운영, 사무국의 순환제 등 지역내 연대체, 네트워크로 활동
-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방식이 필요
- 전국 협의회는 지역 규합으로 세력화, 이익집단화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되며, 기득권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남

· 정책 연구 및 네트워킹 기능보다 사무국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하는 문제
- 지방 협의회의 회비 납부로는 협의회 사무국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집중
- 기본법 체제 하의 정책 대응, 지방 협의회의 정책 컨설팅 및 교육, 협의회간 네트워킹에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봉착

■ 지방 협의회의 현실과 한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제 하에서 협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
- 협의회의 수준은 지역의 시민사회의 수준과 연결되는데, 현재 협의회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활동에 집중적이지는 못함
- 형식적 구성에는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시민사회와 협력, 경쟁,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임

· 외부의 시선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풀 필요가 있으며, 현재 협의회의 소통 채널에 문제에 대해 진단할 필요도 있음

· 지방 협의회의 지역내 역할 문제
- 주로 상근활동가 중심의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회가 하나의 조직체(단체)로서 변모하여 지역내 단체간 경쟁과 긴장 관계 형성

· 협의회 상근자의 직업의 안정성
- 지역에서는 안정적 고용 형태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함
- 하지만 실제 출연 출자기관의 사례를 보면, 산하기관이 되면 관료화가 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타남

3. 당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 협의회의 역할과 방향(공통)

·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써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
- 기본법 시대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을 대비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변화에 따라 받아들이는 반성과 성찰 필요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협의회는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다른 분야와 다르게 종합성이 강한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현재의 협의회 구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는 디딤돌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 고민하여 전면 혁신 검토

· 지역 협의회는 지역단체들 중심의 협의회 취지에 맞는 연대체로 거듭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의 변경과 조직 운영도 전환 검토
- 지역 협의회는 지역에서 중요한 현안이나 미래 의제를 해결하는 단체나 조직으로 전환을 검토
-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변화한 사례를 참고

· 협의회 존재의 필요 이유에 대해 전국협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를 대상으로 전국 표준 모델을 제시
- 광역시, 광역도, 기초시군, 자치구의 분류를 통해 표준 모델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에 따라 적용 가능성 검토

■ 전국 협의회의 위치와 역할

· 전국 협의회 운영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현실과 개선방안
- 전국 협의회 운영 재원은 지방 협의회의 회비 납부로 일부 충당하며, 환경부 사업 예산을 통해 충당하는 형태로 진행됨(과거 운영위를 통해 회비 납부 예산 상승을 합의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못함)
- 현재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되면서 전국협 예산이 내년에 대거 변경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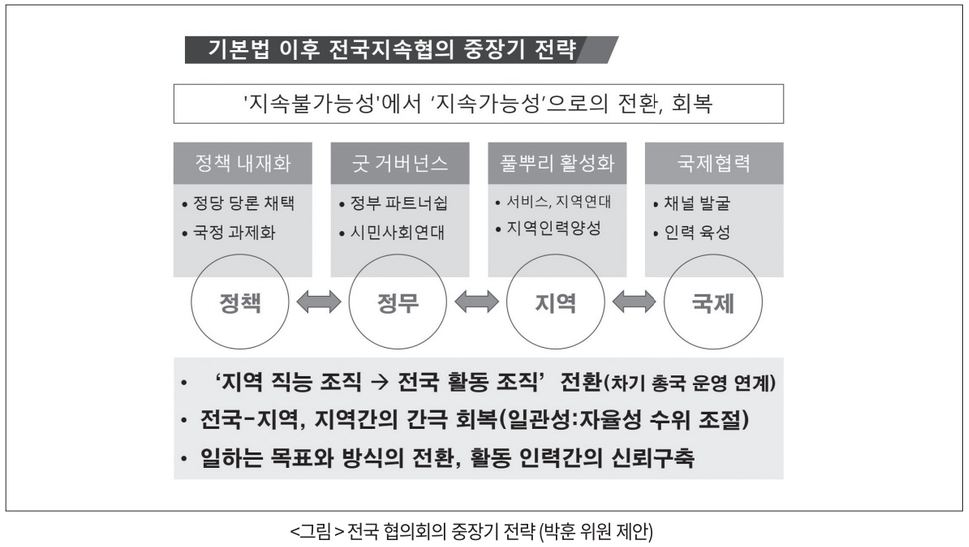

<그림> 전국 협의회의 중장기 전략 (박훈 위원 제안)

- 기초에서 광역까지 전국협으로 연결되는 긍정적 요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회비로 유지되는 구조가 그나마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규정을 만들어 명시적으로 회비 납부를 두는 것도 방안임
- 또한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해 교육 및 정책연구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방 협의회의 교육 지원 활동(사무국처장, 위원, 직원 등)도 도모할 수 있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협 차원에서 지방 협의회 위원 참가의 경우, 별도의 교육 시간 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전국 협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전국 협의회가 전국의 협의회만을 위한 협의회가 될 것인가? 또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행동'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 현재는 지방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운영되는 전국 협의회를 개선해 느슨한 연대체(네트워크 조직)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은 추대방식으로 진행되어 적절한 운영 방식의 전환 검토
- 전국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각종 네트워크가 함께 다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국 협의회 사무총국의 서울 이전도 검토가 필요함

■ 지방 협의회의 위치와 역할

· 기본법 체제 하에서 행정과의 관계 정립 필요
- 환경부서에서 기획부서로의 주무부서 이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대응 필요(추가 논의 필요)

· 지속가능발전의 종합적인 정책 제안과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협의회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SDGs 17개 목표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전통적으로 집중해왔던 환경 중심의 활동영역에서 다양한 파트너십과의 연대를 통해 확대의 노력이 요구됨

· SDGs 이행을 위한 지방 차원의 컨텐츠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필요

· 광역과 기초(시군/구)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 필요
- 법제도적 역할의 한계 개선에 대한 방안 논의 필요 :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가?"
- 현재 지방정부의 법제도 속에서 조례상 법정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한 민간단체로 해석하고 있음
- 한편, 준정부기구로 인정받는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과거 협의회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관료화하는 협의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
- 실제로 이 사례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며, 최근 일반적인 경향은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으로 간주함

· 기본법상 협의회의 위치가 위임 및 위탁 기준 적용의 문제 발생
- 행정위임의 사무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분석하고 부정적, 취약한 점들에 대해 진단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정한 원칙을 지역에 강요해도 이행이 어려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음

· 협의회 운영 원칙이 부재해 각 지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모범적 운영 원칙을 전국 협의회 차원에서 작성해 권고(표준 정관, 운영규칙 등)
- 기초협의회의 경우 행정체계에 포함해 추진하는 경우도 필요
- 지방 협의회 중 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은 삭제 권고

4. 위원회의 결론과 해법 찾기를 위한 방향

·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제 하에서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의 장벽과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출발에서,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실천 운동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협의회는 그 의미를 가짐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존재 의미와 방향성을 찾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과거의 체제 속에 현재와 미래의 정책과 실천운동을 펴 나아가는 협의회는 혁신이 요구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쳐왔고, 그 과정에서 성과와 과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한 발전 방향의 물고를 트는 긍정적인 시도가 있었음
· 그러나 단 몇 개월만의 논의만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협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공동의 숙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님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 향후 협의회의 혁신을 위한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토론을 진행한 사항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모두 함께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 사회 ·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 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 ·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 · 사회 ·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 · 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 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 사회 · 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 · 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 ·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및 도시 · 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 · 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 · 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 · 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 · 정의 · 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 사회 · 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 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 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그 협의 · 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 · 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 · 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 · 군 · 구의 장은 시 · 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 · 군 · 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 · 군 · 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 · 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 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 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 · 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 · 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 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 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 ·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 ·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

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 학계 · 산업계 · 교육계 ·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 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 ·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 · 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 · 군 · 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 ·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 · 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

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 임금 · 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 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 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 · 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 도로 · 항만 · 상하수도 ·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 · 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 ·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 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 · 운영과 조사 · 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

위 · 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 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 ·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 · 투명성 · 포용성 · 대표성 · 책임성 ·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 · 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 · 조사 · 분석하여 관련 제도 · 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 · 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 ·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정 2000. 6.16
개정 2001. 2.28
개정 2004. 2.13
개정 2006. 2.10
개정 2006.12.20
개정 2010. 1.28
개정 2011. 1.19
개정 2012. 2. 7
개정 2013. 1.28
개정 2014. 2. 7
개정 2016. 2. 3
개정 2019. 1. 9

제1조 (명 칭)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 영문: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LSAK)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전국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와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 격)
전국협의회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 이하 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발전 실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4조 (사 업)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국내·외 지자체, NGO들 간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3.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4.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협력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6.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업

제5조 (소재지)
전국협의회의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전국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협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의원 2인을 파견하여, 총회 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전국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전국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전국협의회의 정관 등 제 규정 준수 및 의결사항 이행 의무
5.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6. 회비 미납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국협의회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회장 1인
2. 공동회장 17인 이내
3. 감사 2인
4. 운영위원장 1인
5. 사무총장 1인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상임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공동회장은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새로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상임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과 감사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의 임기는 광역협의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전국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은 전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상임회장은 공동회장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협의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전국협의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사무총장은 사무국처장단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집행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총 회)

총회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협의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국협의회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국협의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회의록 및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총회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총회 회의록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기구)

전국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회장단, 운영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총국, 부설기관,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9조 (공동회장단 운영 및 역할)

① 공동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공동회장단은 전국협의회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환경부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의 장,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네트워크 대표 등으로 한다.

②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서장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외업무 수행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문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부설기관 및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요건을 명기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공동회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은 전국협의회 정회원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국)장이 일원이 된다.
②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및 조직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기구 성격을 가진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 (고문 및 자문위원단)

① 전국협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환경단체 및 학계의 원로, 기업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자문위원단은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 (사무총국)

① 전국협의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26조 (부설기관 및 특별위원회)

① 전국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설기관 및 특별(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 (사업계획서 등)

① 사무총국은 다음 회계년도의 전국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연도별 결산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며, 결산 시에 업무 현황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 항목은 사업과 회계 분야로 한다.

제29조 (회계년도)

① 전국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재원의 조달)

① 전국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분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환경부의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정부의 참여 및 협조)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위원회, 사무총국,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활동 등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는 전국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32조 (준용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부칙 (2000.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1. 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3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6. 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역의제21 추진기구"는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초의제21 추진기구"는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2010.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0조 1항, 11조 1항의 적용은 2011.1.1부터 한다.

부칙 (2011. 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①항 "16인" 삭제 및 "기초협의회 사무국(처)장 약간 명"을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②항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역별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다"를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①항 " 및 각 네트워크 대표" 추가, 제21조 3항 "감사와 사무총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제24조 ④항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을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추천한다", ⑤항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을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13.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2항 "16인"을 "17인", 제10조 ②항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에서 추천한 대표 1인"을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 및 "단,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독립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추천한 대표로 한다" 삭제, 제13조 "상임회장 1인"을 "공동회장 17인", 제26조 ①항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1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4항 "국제워크숍 주선"을 "국제 협력", 6항 "시민운동" 삭제 및 "연구, 조사" 추가, 7항 "사업"을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업", 제10조 ①항 "총회에서 선출"을 "공동회장단에서 호선하고 총회에서 추대", 제12조 ①항 "본 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추가, ④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총회에 보고", 제13조 "공동회장 17인"을 "공동회장단", 제20조 ①항 "집행책임자"을 "장", 제22조 ①항 비문 수정, ④항 "상임회장에 보고"를 "공동회장단에 보고"로 한다.

부칙 (2016.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 "운영규정"을 "정관", 제10조 ①항 "호선"을 "추천", ②항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④항과 ⑤항 순서 조정, 제11조 ①항 "1회" 삭제, 제26조 ①항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삭제로 한다.

부칙 (201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호 "수범사례"를 "모범사례", 7호 "운영세칙"을 "세부운영규정", 제11조 ①항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추가, 제19조 ②항 "지방의제21"을 "전국협의회", 제21조 5호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 5호, 6호를 6호, 7호로 변경, 제23조 ③항 "지방의제21 공통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제27조 ①항 "사무처"를 "사무총국", "개시 2개월 전까지"를 "개시 20일 전까지"로 한다.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 · 사회 ·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 지표

●모두보고 ◐일부보고 ○보고안함 -해당없음

영역	주제	지표명	보고여부	페이지
조직 프로필	조직개요	조직의 일반사항 소개	●	19-28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조직의 미션과 비전	●	20
		조직의 핵심가치	●	20
	지속가능성 지향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조직의 연관성	●	20, 107
	이사회/운영위원회 및 의사결정	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	21-25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위한 노력	●	22-25
	이해관계자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 구성	●	31-33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	81-96
	보고의 조건 및 특성	보고서 개요 및 보고범위	●	2
		보고서 신뢰도 증진 노력	●	105
조직의 지속가능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재정 운영 및 재무적 건전성 현황	●	95-104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활동	●	45-47, 95-104
	윤리적인 조직 운영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력	●	95-104
		윤리경영/반부패 정책과 활동	●	95-99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오염 저감 및 생태계 보호노력	●	107
		자원 절약 및 에너지 저감 활동	●	107
	인권노동	기본적인 노동 관리 준수 현황	●	105
		직원/활동가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활동	●	106
		성인지,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 노력	●	105-107
		직원의 만족도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	●	105-106
		일과 삶의 조화와 자기 개발 지원	◐	106
		직원 외 활동가 대우 및 상호 소통	●	105-107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현황	●	107
	가치사슬/영향권	가치사슬/영향권에서 지속가능성 노력	●	75-94, 107
프로그램 효과성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의 선정, 목표 및 계획 수립 절차	◐	75-80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 절차	◐	75-94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노력	◐	75-94
	조직 가치와의 연계성	프로그램 임팩트를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	75-94
	파트너십 관계	파트너십 관리 현황, 기대효과 및 성과	●	81-94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고려와 참여	프로그램 별로 파악된 이해관계자	●	81-94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 현황 및 결과	●	81-94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절차	◐	81-94
	인권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관점	●	107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램 및 수행 노력	●	107

2022년 협의회 발간물 리스트

순번	사업명	발간물명	종류	비고
1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대표사업 모델 발굴 용역사업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대표사업 모델 발굴 대표사례집	책자, PDF	
2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대표사업 모델 발굴 우수사례집	PDF	
3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대표사업 모델 발굴 결과보고서	책자	
4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대표사업 소개 영상	영상	
5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원 용역사업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원 이행메뉴얼	책자, PDF	
6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원 결과보고서	책자	
7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조사 및 홍보·교육 위탁사업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례조사 및 홍보·교육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책자	
8		2022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웹포스터, 리플렛	
9		우리집SDGs 공동조사	웹포스터	
10		#ACT4SDGs 캠페인	웹포스터	
11		지속가능발전주간	웹포스터	
12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 (국문)	책자, PDF	
13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 (영문)	책자, PDF	
14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프로그램조사 연구용역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프로그램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15	운봉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운봉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16	충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17	당진시 ESG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당진시 ESG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18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준) 출범·협약기념 정책포럼	자료집	
19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2022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체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20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자료집	

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권역토론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권역별 토론회 자료집 (수도,강원/호남/경상,제주/충청)	자료집	
22	민선8기 지방선거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	민선8기 지방선거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	웹포스터	
23	월간지속협	사람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SDGs사람책 '월간지속협'	웹포스터	
24	2022년 지역사회 탄소중립 환경교육리더 양성교육 운영③	모집 포스터	웹포스터	
25		사전워크북 - 온라인교육용	책자	
26		사전워크북 - 집체교육용	책자	
27		온라인 교육 강의 : 환경교육론, 환경교육자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영상	
28	활동가역량강화교육	별들의대잔치:민관협력사업	영상	
29		별들의대잔치:SDGs활용의 모든 것	영상	
30		별들의대잔치:행사진행의 모든 것	영상	
31		별들의대잔치:국제협력의 모든 것	영상	
32		별들의대잔치:행정에 대한 이해	영상	
33		2022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체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34	지속가능발전교육교재제작	지속가능발전교육(ESD)사례집	PDF	
35		지속가능발전교육교재제작 (초4~6학년대상)	PDF	
36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포럼 결과보고서	PDF	
37	경기도 광역 및 기초 시군 민선8기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및 SDGs연계 지속가능성 분석 연구용역	경기도 광역 및 기초 시군 민선8기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및 G-SDGs 연계 분석 보고서	PDF	
38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연구용역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법인
39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	책자	
40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워크북	책자	
41		온라인 강의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숙의공론장의 필요	영상	
42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서	책자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활동 결과

1. 22년 법인 사업목표

○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한 다양한 국내외 실천사례와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관련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관련자들의 교육 · 훈련 ·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역 역량을 발전 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함.

○ 특히 지속가능발전 관련 각 지역의 다양한 실천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개발 및 정책의 지속성평가활동, 지역개발과정의 갈등관리 방안 개발과 제공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함.

2. 주요사업

가. 지속가능발전 연구

1) ESD 분야 연구

■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재 제작 연구

- 사 업 명 : 지속가능발전교육교재제작(초 4-6학년 대상)
- 사업기간 : 2022. 4. 1 ~ 12. 31(9개월간)
- 사 업 비 : 18,000천원
- 수행방법 : 용역수행(발주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수행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수행기관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회(공동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참여전문가 : 제현수(지속협교육위원장), 이재영(국립환경교육센터장), 김다원(광주교대 교수) 등
- 연구결과 : 사업 결과보고서1식, 교육사례집 1식, 교육교재 1식, 정책포럼 자료집 1식

구 분	내 용	결과물
지속가능발전 교육사례 수집	<목적>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확대 <내용> 전국 지속가능발전 교육 우수 사례 수집 - 행정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우수한 교육 사례 수집 <결과> 사례집 발간(PDF)	지속가능발전 교육사례 사례집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포럼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 정보교류, 역량강화 <내용> 초등교사 및 전문가, 지지협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결과> 포럼1회 개최 및 포럼결과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포럼개최, 포럼자료집
지속가능발전 교재제작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 교재 제작 <내용> 초 4-6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재 제작 <결과> 교육교재 제작<PDF>	교재제작회의 및 교재

■ 전국지속협 뉴스레터

· 22년 1월부터 월 1회 뉴스레터 공동으로 제작배포
· 제작 협업 구조 : 국내외 동향 등 전문자료 수집 : 전국협 정책위(학회, 지방정부등)
지역협의회 활동소식 및 지역자료 공유 : 지역협의회
발행 의견수렴 및 지속협 자료작성 지원 : 운영위원회
· 수록내용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식
SDGs 국민인식 증진을 위한 정보 등
· 사업결과물 : 뉴스레터 12 회차 제작 발송
· 결과물 활용 : 지역지속협 및 협의회 연계연락처 리스트 2,000여 명에게 발송

2) SDGs 확산 연구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 사업기간 : 2022. 6. 2 ~ 2022. 11. 30
· 사업비용 : 7,000천원

2. 사업의 목적 및 범위

가. 사업의 배경

· 인류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HS-SDGs)를 수립함(2020년).
· 이해관계자 공동학습과 숙의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생태계를 확장함.
- 화성시 SDGs 수립과 이행은 지역 내 SDGs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에 따라 SDGs 이행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음.
· 화성지속협 17개 목표별 위원회가 목표와 연결된 민간 실천사례를 취합하고 민간의 활동역량을 지원 필요
- 기존 4개 위원회(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를 17개 목표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10개 위원회(차별빈곤, 건강, 교육, 공동체, 먹거리, 일자리경제, 소비생산, 생태계, 기후에너지, 평화거버넌스)로 구분함.

나. 사업의 목적

· 화성시 SDGs와 연계한 시민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진단
· 화성시 SDGs와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 사례 등을 공유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성시 SDGs 이해당사자(지속협 위원)로서 화성시 SDGs 이행과정을 진단 및 평가
· 연구범위
- 실천사례의 경우 2021년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 화성시 SDGs 시민실천사례 발굴
-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목적, 주요성과, 사업추진시 어려웠던 점 /개선 방향 등
-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점검

3.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가. 사업 추진 결과

· 화성시SDGs 이해 · 해당 목표 및 화성시SDGs 생태계 파악	· 기존 사례단체 취합기간 (4~6월) · 신규발굴 단체 · 사례 목록화 (6월) · 신규발굴 사례 취합 및 분석 기간(6~9월)	· 위원회별 종합의견서 작성 (10월) · 시민실천 사례보고서 작성완료(10월말)
위원회별 사전준비(4월)	**시민실천 사례 취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화성시 SDGs 이행평가 보고회

*연계프로그램 :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검토

4. 연구최종결과물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 경기도 민선8기 후보자공약 및 SDGs연계성 분석 용역

1. 사 업 명 : 경기도 광역 및 기초 시 · 군 민선8기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및 G-SDGs 연계분석

2. 연구 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 연계 분석
-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 연계 분석

3.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 · 군
- 시간적 범위 : 2022년 5월 1일 ~ 20일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 · 군 지자체장 선거 후보 공약과 UN SDGs 및 G-SDGs(경기도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연계성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정책 및 실천사업과의 연계성

4. 주요 연구내용

- UN SDG 및 G-SDGs 기준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자체장 후보 공약 분석
- 5월13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기도지사, 31개 시군지자체장 후보 공약을 UN SDGs와 G-SDGs 17개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해 각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지 검토.
- UN SDGs, G-SDGs 기반 공약 분석 및 분석 데이터 토대로 보고서 작성
- 작성 보고서 토대로 '민선8기 지속가능발전 전망' 주제 최종보고회 겸 토론회 개최
-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실천사업의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시군 협의회의 주요 정책 및 실천사업 사례 정리
- 경기 SDGs와 연계해 사업의 연계성 검토
- 주요공약과 시군 협의회의 추진 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성 검토

5. 연구참여

- 연구자 : 윤희철, 양준화, 박정진
- 자문위원 : 김덕일 운영위원장 등

6. 최종 산출물 : 경기도 민선8기 후보자공약 및 SDGs연계성 분석 보고서

■ 대구 SDGs지표조사 연구용역

1. 사업취지 및 목적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자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체계 구축 · 추진
- K-SDGs 수립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필요
- 대구SDGs 작성에 따른 이행사업 추진과 함께 대구SDGs 이행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작성 사업 추진을 통한 대구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9월 ~ 12월
- 주요내용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대구SDGs 지표 작성을 위한 지표위원회 구성
  대구SDGs 지표 작성을 위한 학습, 자료조사, 분석, 이행평가 보고서 등 작성
  대구SDGs 시민제안 10대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지표 작성 시범사업 추진
  수원, 전주 등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의 추진사례 연구와 분석에 따른 지역 추진체계 구축 방안 모색
  대구SDGs 성과 점검과 이행 수준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기반 구축

3. 추진결과 : 최종보고서 23년 1월 발간예정

사업내용	시기	비고
· 대구SDGs지표위원회 구성 · 지표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5월~6월	- 지표 정책위원회 구성 - 세부추진계획 논의 등
· SDGs 평가체계 우수사례 연구	6월	- 수원, 전주 등
· 대구SDGs 지표 평가 체계 구축	7월~12월	- 대구지속협 작성 체계 - 행정기관 파트너쉽 등
· 보고서 작성	7월~12월	- 자료조사, 분석, 작성 등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 연구용역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정읍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기구인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 새 출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주류화를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최근 지속가능발전포럼, 시민 100인 원탁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 참여주체들의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환경,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세부 방안을 통해 정읍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정읍시의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을 조사 및 분석
- 정읍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조사 및 제시

2. 범위와 방법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2년 현재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 방법론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통계 및 각종 기본계획의 자료를 토대로 자료 수집 및 활용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2030년 목표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
- 공간적 범위 : 정읍시 일원
- 내용적 범위 : 정읍시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조사 및 분석, 정읍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풀 제안

3. 연구의 세부 내용

- 지속가능성 관점의 정읍시의 기초현황을 조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현행 통계 자료를 정리
- 정읍시 통계연보, 사회조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
- 법정 계획을 기반으로 관련 현황 조사 및 정리
- SDGs 17개 목표에 부합하게 자료 재정리 및 분석을 통해 정읍시의 지속가능성 기초자료 작성
- 기초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관점의 진단과 평가
-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 자료 분석 : 과거 5년간의 변화를 토대로 추세 분석
- 타 지역과의 상대 비교를 통한 현 상황 진단 : 전국 평균 또는 전라북도 평균으로 상대 비교
- 추세분석과 상대 비교를 통한 정읍의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분석 및 진단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참여 논의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최근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토론회, 라운드 테이블 등의 시민 참여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 분석 제시
- 작성 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적인 내용 검토(숙의공론장 활용)
-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정읍시 지속가능성 지표 제안
-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지표풀 제시
-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제안하는 지표에 대한 검증

4. 연구의 추진체계

기초조사 및 자료 수집	· 현황 통계 조사 · 정읍시 법정 기본계획 등 자료 수집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고서 수집
↓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진단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진단 · SDGs 17개 목표 중 4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환경, 경제, 사회, 법제도 및 협치)
↓	
지표 수집	· 지표 관련 통계 자료 수집
↓	
지표 분석	· 정읍시에 부합한 지표 데이터 분석
↓	
진단 및 평가 결과	·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 지표 제안 보고서 작성
↓	
자문 및 검토	· 시민 의견 수렴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자문 및 검토
↓	
보고서 제출	·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출

5. 최종 산출물 :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 연구용역보고서

3) 시민참여 분야 연구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워크숍

1. 사업명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2.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이해관계자그룹 형성
- 이해관계자간 역할 점검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현황파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 추진 과제도출.

3. 사업개요

- 일 시 : 2022. 10월 ~ 12월
- 참가대상 :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지자체, 협의회)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 주최,주관 :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프로그램 추진 결과

단계	내용	비고
1. 과제 도출 워크숍 참여자 모집	• 지역 내 이해관계자 모집 - 여성, 아동/청소년, 농/어민, 시민단체, 노동자, 기업/산업계,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장애인, 노인, 교육계, 자원봉사자	
2.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조사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요약 - 인식, 조직, 정책 등	• 개요 형식의 자료 조사
3. 참여자 대상 사전교육(2~3회차)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 과제 도출 워크숍의 필요와 의미 • 지속가능발전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 2~3회차 사전 교육을 통한 참여자 인식증진	
4. 과제 도출 워크숍 준비	• 과제 도출 워크숍 참여자 그룹화 • 퍼실리테이터 구성 및 사전 교육	
5. 과제 도출 워크숍 운영	•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슈 토론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과제 발굴 • 지속가능발전 그룹별 과제 작성 및 발표	• 워크숍 프로그램

5. 최종산출물 : 추진결과 보고서

3. 조직 운영사업

1) 운영 주요사항

○ 법인명칭 :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자 양준화)
○ 주사무소 : 대전 중구 중앙로 121번길 44, 203(선화동, 창성빌딩)
○ 등록번호 : 165221-0010938
○ 법인설립 허가 21년 12월 06일
○ 법인성립 일자 21년 12월 14일

2) 22년 운영 일지 (12월 31일 기준)

- 4월 지방정부협의회(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교재제작 용역 수주(완료)
  → 계약기간 : 4.1 ~ 9.30 / 계약금액 : 23,000,000원
  → 8/31일자 계약기간 및 금액 변경
  계약기간 : 4.1 ~ 12.31 / 계약금액 : 18,000,000원
- 4월 경기지속협 - 민선8기 지방선거 후보자공약 및 SDGs연계 지속가능성분석 연구용역 수주 (완료)
  → 계약기간 : 4.11~5.27 / 계약금액 : 20,000,000원
- 6월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홍보지원금 5,000,000원 입금
  → 11월22일 솔라리그 시상식 진행 후 상금집행 (완료)
- 8월 전국지속협 - 사업후원금 지원 5,000,000원
- 8월 화성지속협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수주 (완료)
  → 계약기간 : 6.2~11.30 / 계약금액 : 7,000,000원
- 9월 정읍지속협 -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연구용역 수주 (완료)
  → 계약기간 : 9.1~12.31 / 계약금액 : 12,000,000원
- 10월 전국지속협 업무협약 사업 후원금 지원 10,000,000원
  → 시민햇빛발전소 출자금 (전주 5,000,000원 – 12월말 출자완료 / 보령 5,000,000원)
- 11월 대구지속협 - 대구SDGs지표조사 연구용역 수주 (진행중)
  → 계약기간 : 9.28~12.27 / 계약금액 : 20,000,000원
- 11월 창원지속협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워크숍 연구용역 계약 수주 (완료)
  → 계약기간 : 10.1~12.31 / 계약금액 : 9,658,000원

▶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 기재부 승인 후 공익법인 지정 (12월30일 공시)

4.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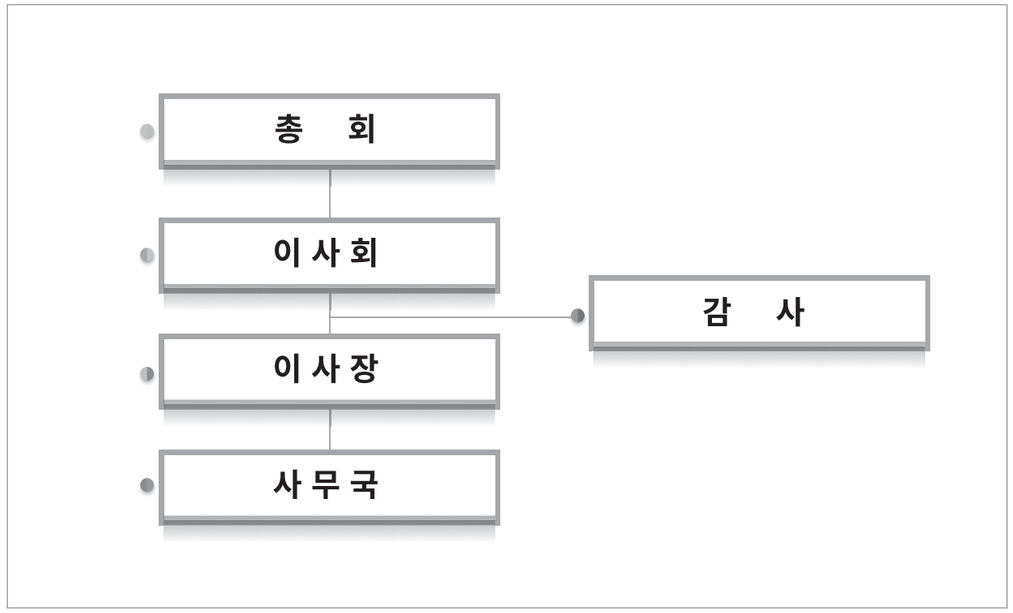

5.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입지출 현황 (22.01.01 ~ 22.12.31)

예 산 과 목			수 입 액
관	항	목	
총 계			115,506,018
	일반수입		28,848,018
		회비	1,500,000
		법인출연금	5,000,000
		이자외사업수입	2,348,018
		정기,사업후원금 (전국)	15,000,000
		홍보지원금 (솔라리그)	5,000,000
	사업비(목적사업)		86,658,000
		교육교재제작용역	18,000,000
		민선8기후보자공약 및 SDGs분석 용역	20,000,000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7,000,000
		대구SDGs 지표조사 연구용역	20,000,000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워크숍	9,658,000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연구용역	12,000,000

예 산 과 목			지출액 지출액
관	항	목	
총 계			115,506,018
	지출(관리운영비)		15,033,490
		지급임차료	4,308,540
		지급수수료	628,700
		세금과공과	96,250
		홍보지원금 (솔라리그)	5,000,000
		시민햇빛발전출자금	5,000,000
	사업비(목적사업)		86,658,000
		교육교재용역	18,000,000
		민선8기후보자공약 및 SDGs분석 용역	20,000,000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실천사례 모니터링 연구용역	7,000,000
		대구SDGs 지표조사 연구용역	20,000,000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워크숍	9,658,000
		정읍시 지속가능성 현황 및 지표연구용역	12,000,000
	이월금		13,814,528

발행인 김영진
발행일 2023. 1
발행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편집인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의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2000년 설치된 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1번길 44, 203호(선화동, 창성빌딩)
전화 042-223-1141 / 전송 042-223-1142
이메일 sdkoreaorg@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sdkorea.org